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4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회장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ECCK)회원 여러분,

2024 ECCK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는 2015년 처음으로 백서를 발행한 이래, 10번째 백서를 완성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백서는 ECCK의 주요 간행물이자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모든 건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사 대표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2024년도 ECCK 백서는 한국 규제 환경과 관련된 70여개의 이슈와 건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백서가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관련 정책 변화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서에서 언급된 이슈들 중 상당 부분이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규제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변화를 선제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 표준에 기반한 관리 체계는 효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촉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화학, 화장품 산업은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시장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디지털, 녹색 에너지 및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도 유사한 성장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EU 디지털 협정 논의와 녹색 에너지 관련 법제도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분야의 성공 가능성은 한국과 유럽 모두에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6월 ECCK 회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와 ECCK는 정부와의 효과적인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과 유럽 간의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ECCK는 앞으로도 유럽 기업들과 한국 정부 간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시장은 여전히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동안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 한국으로의 유럽 FDI는 전년 대비 21.6% 증가하여 9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FDI 연간 목표액 35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오찬 및 4월 3일 산업부 장관 주최 '외국인 투자전략 회의'에 참석하면서 위와 같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생 에너지, 정밀화학, 반도체,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유망한 전망을 보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잠재적 FDI 기회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ECCK 백서 발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회원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백서가 회원들이

한국 정부와의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국 기업과 유럽 커뮤니티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총장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ECCK)회원 여러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비즈니스 환경과 관련하여 유럽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ECCK의 네트워크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네바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그리고 영국 정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유럽 비즈니스 기구 네트워크 (EBOWN)의 일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의 한국 국회의원 선거, 6월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되었고,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그 어느때보다 정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게 점쳐지는 한 해였습니다. 아직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친환경 및 기술 전환, 그리고 산업 인프라의 자율성과 회복탄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정책 기조는 새로운 임기의 의회와 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CCK 역시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유럽 기업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기업 투자와 교류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CCK 백서는 한국 내 유럽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도전 과제를 다루며, 이를 통해 한국 정부와 유럽 기업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해 왔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백서는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되는 동시에 이미 제안하거나 개선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ECCK 위원회에 소속된 업계 전문가들과 위원회 위원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17개의 위원회를 통해 70여 개의 안건을 취합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안건이 새로운 안건이며 개정안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 및 재건의 안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백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선/완화 정책이 계속 추진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백서에서 언급된 안건들은 유럽계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우선 순위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특히 인사 및 준법 포럼에서 제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건의사항은 모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더욱 신중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그 목적과 시행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건의 사항들이 실질적인 기업 운영 및 경쟁력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라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 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해외 직접 투자

기업들의 투자 결정 단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한국의 FDI 실적은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해석됩니다. 노동 시장과 관련한 ECCK의 제안은 해외 직접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쟁력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ECCK는 한국 기업과 유럽 공동체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테판 언스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총장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4

목차

ECCK 백서 2024 인사말 - 필립 반 후프 회장	p. 2
ECCK 백서 2024 인사말 - 스테판 언스트 총장	p. 4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소개	p. 8
백서 사용 안내서	p. 17
2023 리뷰	p. 19
ECCK 산업별 위원회 (포럼) 보고서	p. 28
항공 방위	p. 29
자동차	p. 31
주류	p. 38
화학	p. 43
화장품	p. 49
디지털	p. 53
에너지 및 환경	p. 56
패션 및 유통	p. 63
식품	p. 67
헬스케어	p. 73
인사 및 준법	p. 78
보험	p. 80
지식재산권	p. 87
주방 및 소형가전	p. 95
조선 및 해양	p. 99
지속가능성	p. 101
조세	p. 103
부록	p. 106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소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협회입니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 유럽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350여개 이상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약 11 만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회원사 대부분은 유럽계 기업들이지만, 가입을 원하는 모든 국적의 기업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CCK는 회원사들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또한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는 운영과 방향에 대하여 정보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은 사무국을 통해 집행됩니다.

ECCK는 유럽 기업들에게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및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 기업들과 한국 정부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지향합니다. 연간 발행하는 ECCK 백서는 ECCK가 유럽 기업들과 한국 정부 간에 소통 창구가 되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럽과 한국을 연결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국내 및 글로벌 CSR파트너들과(자선/봉사단체) 멤버사들을 연결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CCK는 유럽집행위원회 및 유럽자유무역협회(EFTA)와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ECCK는 전세계 유럽상공회의소의 모임인 유럽 비즈니스 월드와이드 네트워크(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 Worldwide Network, EBOWN)의 멤버로도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이념 및 활동목적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영역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의 대화 촉진을 통한 공정하고 개방된 비즈니스 환경 보장
- 한국과 유럽의 비즈니스, 경제 및 규제 발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소통 촉진
- 회원 및 파트너 대상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올바른 기업지배구조 실천 촉진을 통해 한국 사회에 공헌
- 유럽 비즈니스 및 문화적 대사로써 활동

이사진



필립 반 후프(벨기에)
회장
ING 한국
대표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회장은 2021년부터 ING은행 한국대표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ING은행 한국대표로 부임 전까지, 싱가포르에 위치한 ING 은행 아시아 태평양 금융기관영업부 대표를 맡았으며, 또한 2017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임원직을 역임했습니다. 반 후프 회장은 29년의 은행(banking)산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싱가포르, 한국, 일본에서의 15년 간의 근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과의 전략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 외에도 그는, 경영진/이사회 수준에서 보험사, 자산관리자, 증권사 및 국부펀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적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 후프 회장은 벨기에 시민으로, 2021년 ECCK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22년 ECCK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바 있으며, 2023년 6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유럽상의(Eurocham in Singapore)에서 금융서비스 위원회 회장을 2018년까지 맡았고,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싱가포르유럽상의 부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마티아스 바이틀(독일)
부회장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마티아스 바이틀(Mathias Vaitl) 대표이사는 2023년 9월 1일부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05년 독일 뉘팅겐-가이슬링겐 대학교(HfWU)에서 자동차 산업 및 국제 비즈니스 관리 전공으로 경영학 디플로마(FH)를 취득하고, 같은 해 체코 프라하 지사에서 딜러 네트워크 비즈니스 매니저로 메르세데스-벤츠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독일, 중국, 체코 시장에서 디지털 서비스, 영업, 교육 및 인증, 고객 서비스 및 네트워크 개발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사진



퍼 스테니우스(핀란드)
부회장
레달
대표

퍼 스테니우스(Per Stenius) 부회장은 핀란드 시민권자로 2010년부터 레달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레달본사의 회장 겸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산업에서의 전략 및 운영 프로세스 개발 분야에서 2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McKinsey & Company, Accenture, Stratos Ventures 등 여러 기술 회사에서 최고 경영 컨설턴트와 경영진으로서의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헬싱키 공과대학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는 비즈니스 및 과학 분야 주요 학술지에 30편 이상의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레달코리아와 함께 ECCK에 가입하였습니다.



이가영(한국)
이사
크노엘코리아
대표

이가영(Gayoung Lee) 이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2016년 1월 한국법인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크노엘에 합류하기 전, 주로 컨설턴트로서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관련 부문에서 종사하였습니다. 크노엘에서는 화학규제 관련 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릭 롤란스(벨기에)
이사
ER-MARINE
대표

에릭 롤란스(Erik Roelans) 이사는 벨기에 시민이며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ER-MARINE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해상 석유 및 가스 운영 및 해상 신조선 프로젝트에서 쌓은 20년 이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2008년부터 에릭 롤란스는 해양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와 LPG, LNG, 메탄올 및 해양 설비의 하이브리드 전기화를 통한 대체 연료 구현 개념을 개발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Erik은 한국 부유식 해상풍력 주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에서 전문성을 구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를 보다 지속 가능한 세상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으로 전환합니다.



유태승(한국)
이사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
공동대표

유태승(David Taeseung Yoo) 이사는 한국 출신으로 2018년 이후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를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COP는 한국에 Multi giga watt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을 확보하여 개발 중에 있는 이 분야의 선도 기업입니다. 그는 국내외 해상풍력사업의 실전경력을 갖춘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총 13년간 해상풍력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해상풍력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기의 개발 및 실증센터의 설립을 포함한 국가 해상풍력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였으며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개발하고, 정부의 서남권 2.5GW 급 해상풍력사업의 마스터플랜 및 추진계획 수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유 대표는 현재 COP Korea의 국내 해상풍력사업을 총괄 리드하고 있으며 관련분야의 깊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COP Korea 의 탁월한 성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브로웰(영국)
감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로버트 브로웰(Robert Browell) 감사는 영국 시민권자이며, PwC의 국내 멤버 펌(Member Firm)이자 한국 최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일회계법인의 Partner입니다. 브로웰 감사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유럽 기업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국적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20년 이상 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PwC UK에 첫 입사 후 그는, 10년 이상 근무하며 영국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2012년도에 삼일회계법인에 입사를 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웰 감사는 현재 유럽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 위원장과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요한 반드롬(벨기에)
이사
김앤장
선임고문

요한 반드롬(Johan Vandromme) 이사는 벨기에 출신으로 2007년-2009년,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김앤장의 선임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반드롬 이사는 2007년 한국에 오기 전, 2001년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s Competition Directorate-General) 담당관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주 베이징 EU 대표부(European Commission at the Delegation in Beijing)로 복귀해 무역 및 경쟁 문제를 다뤘으며, 이후 2013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 김앤장 선임고문으로 부임 전까지, 베이징 대표부(Beijing Delegation)에서 위원회의 경쟁 및 공정 정책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스테판 언스트
총장

스테판 언스트(Stefan Ernst)는 2023년 9월 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가입하였으며 2023년 10월1일부터 총장직을 맡았습니다.

언스트 총장은 약 20여년간 바이어스도르프(Beiersdorf AG)에서 재직하였으며 광범위한 마케팅 및 경영 경력을 바탕으로 유럽, 남미,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바이어스도르프 한국 지사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그후 2015년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 독일 기반의 글로벌 제약운영 부사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16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액센츄어 송의 스타트업 기업인 마케비전 코리아(Mackevision Korea)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2019년부터 최근까지 차벨파트너스 건축사무소(Zabel+Partners architechts)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했습니다.

언스트 신임 총장은 독일 국적으로,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어에 능통하며, 다양한 글로벌 환경과 문화에서 28년간 비즈니스에 몸담은 마케팅 및 경영 전문가입니다. 앞서1995년에 영국 미들섹스 대학 유럽경영학 학위와 독일 유럽비즈니스스쿨의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김보선
부총장

노금채
팀장, 회계 및 총무

박안숙
사무, 위원회 총괄, 화장품 / 헬스케어 위원회

서효경
이사, 주류 / 식품 /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강선영
매니저, 패션 및 유통 위원회

김경현
매니저, 화학 / 디지털 / 물류 위원회

김시윤
매니저, 보험 위원회 / 조세 포럼 / CFO 포럼

임창훈
부장, 자동차 / 항공 및 방위 산업 위원회

신혜원
매니저, 에너지 및 환경 / 지속가능성 / 관광 위원회

윤신원
매니저, 주류 / 식품 /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심혜원
팀장, 마케팅 및 이벤트 매니지먼트

장유리
팀장,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조보경
매니저, 인사 및 준법 포럼, 인사 및 총무

조혜은
팀장, 멤버십 및 대외협력

안드류 밀라드
부산 지부장

김예지
매니저, 조선 및 해양 위원회

위원회 및 포럼

산업별 위원회 및 포럼은 상공회의소 활동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와 포럼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현재 해당산업의 규제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무역/사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제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규제기관과 관련된 특정산업의 이슈들을 주로 다루는 반면, 포럼에서는 인사관리, 사회공헌활동 등 포괄적인 주제들을 논의합니다.

행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서는 비즈니스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동시에 회원들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산업 및 경제계의 목소리를 한국 정부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소통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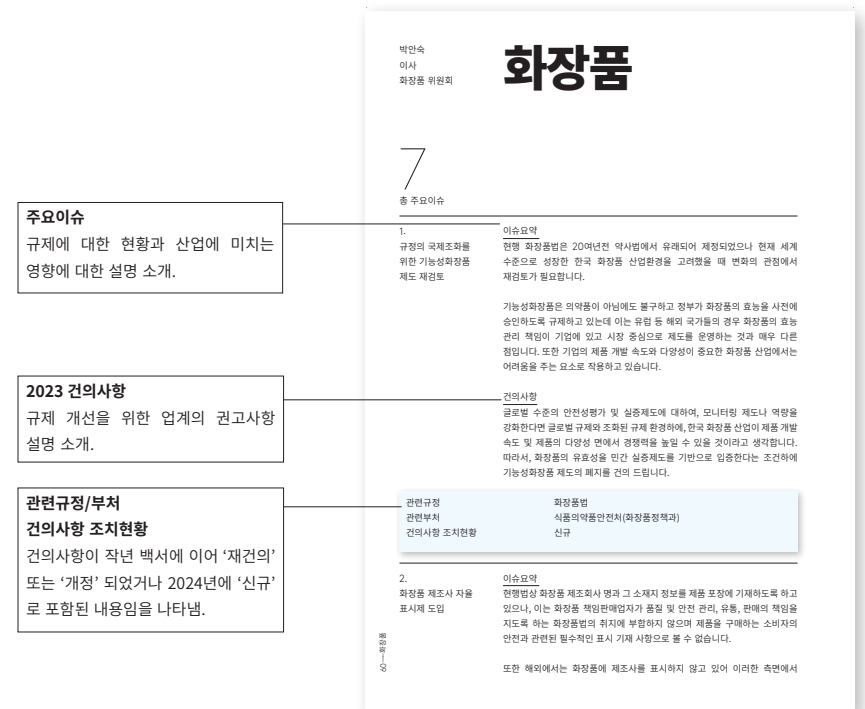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정보교류의 중심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여, 회원사들에게 시장동향과 규제이슈, 주요 사회적 트렌드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 또는 특정한 산업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기 간행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ECCK 백서(ECCK White Paper)
- 기업환경조사 보고서(Business Confidence Survey)
- 디지털 매거진(ECCK Connect Magazine)
- ECCK 회원명부(ECCK Membership Directory)
- 주간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백서 사용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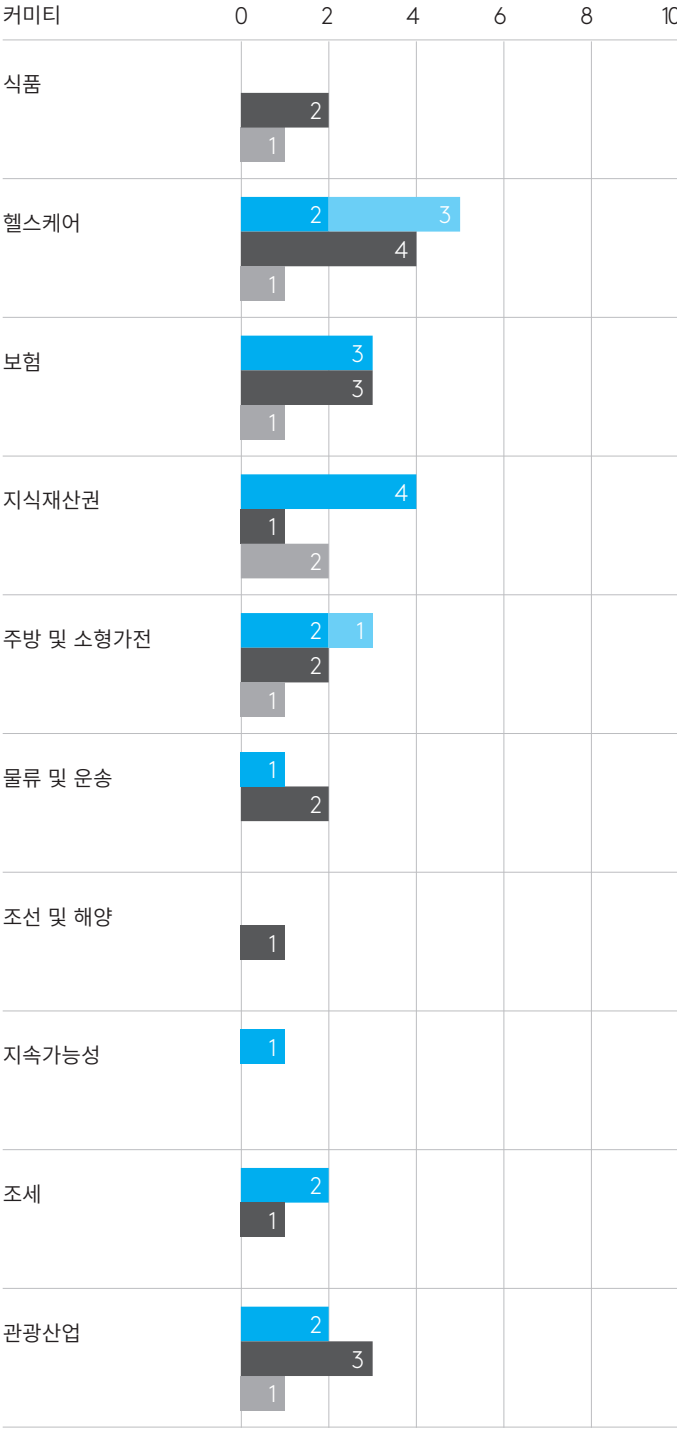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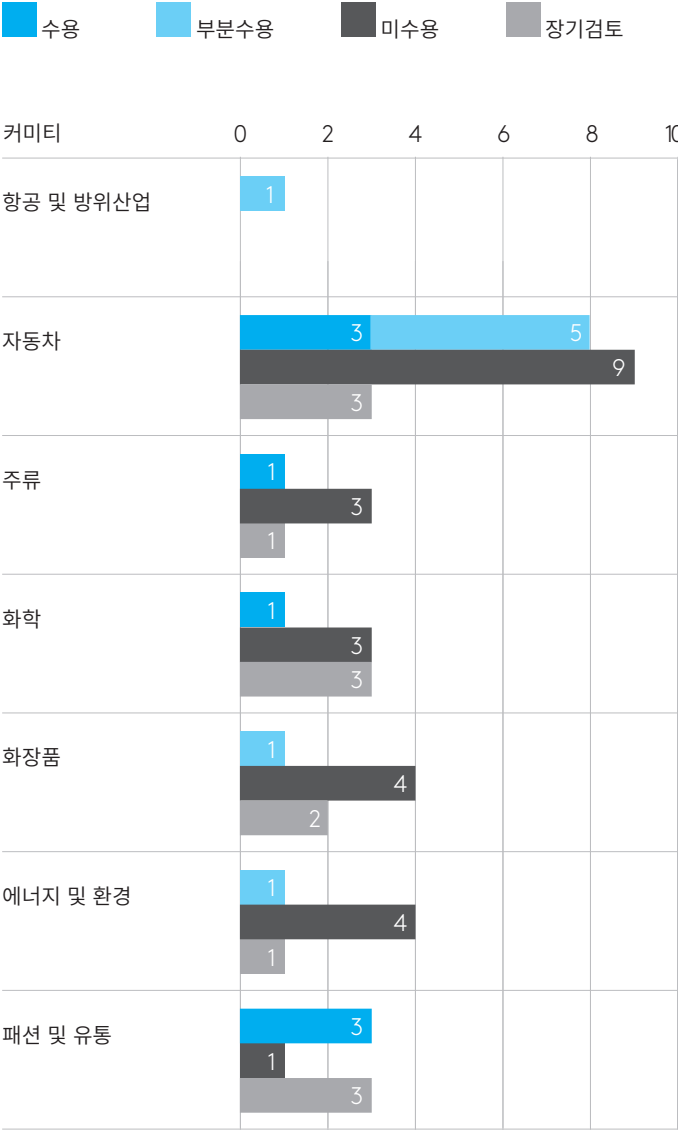
ECCK 백서 2024 사용 안내서: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

해당 백서는 2024년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70여 개의 산업 및 규제 관련 이슈와 건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한국 기업환경 및 규제 환경을 조성에 일조하고자 ECCK의 17개의 산업별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본 백서는 오로지 한국과 유럽 기업 상호간 우호증진과 양측 정부간의 건설적이고 열린 대화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해당 백서에 제기된 모든 이슈는 관련 당국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함께 제시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릅니다.



2023 리뷰

2023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17개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이슈 및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00개의 건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각 규제 이슈에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회신 내용은 아래 산업별로 요약 정리 되어 있습니다.



2023 리뷰

2023년도 각 산업별 규제이슈 및 건의사항과 (총 100개) 그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 회신 내용 및 ECCK의 조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 수용	☑ 안전종료(완료)
		⬇ 부분수용	⊗ 안전종료(중단)
		⊗ 미수용	⚡ 진행상황 점검
		🕒 장기검토	🔄 재건의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항공 방위	1 절충교역 정책 개선	⬇	⚡
자동차	1 한-EU FTA 및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에서의 기술규정 인정 항목에 대한	⬇	🔄
	2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의 HS Code 수정	⊗	🔄
	3 구동축전지 안전성 인증 제도	⬇	⚡
	4 자동차 너비 기준에 대한 유연성 부여	⊗	🔄
	5 구동축전지 안전기준에 대한 UN Regulation 형식 승인서의 인정	⊗	⚡
	6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제도 개선	⬇	⚡
	7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의 마련	⬇	⚡
	8 배출가스 변경보고절차에서의 전산화 적용	⊗	🔄
	9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에서의 유연성 부여	⊗	🔄
	10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의 마련	🕒	⚡
	11 전기자동차의 저온 전기동력 주행거리 시험 조건	☑	⚡
	12 전기자동차의 인증 시 제출하는 자료 항목의 개선	⊗	⊗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주류	13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	🔄
	14 인증시험/광고 목적 자동차에 대한 관리 기준의 개선		⬇	🔄
	15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KENCIS) 개선을 통한 인증 절차 효율화		☑	⚡
	16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시험 시설에 대한 변경 보고 절차의 명확화		☑	⚡
	17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등재 절차 개선		🕒	⚡
	18 자동차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무역 장벽 요소 제거		⊗	⚡
	19 자동차 관련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	🔄
	20 자동차 규제 부처의 일원화		⊗	⚡
	1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 상거래 기회 제공		⊗	🔄
	2 발효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	🔄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양표시 기준 도입		☑	🔄
	4 물류 허브 이용을 위한 직접운송원칙 및 원산지 규정 재검토		⊗	⊗
	5 주류 방송 광고 시 알코올 도수 제한 재검토		⊗	⊗
화학	1 국외등록을 위한 정부 보유 국내 유해성 자료의 구매		🕒	⚡
	2 등록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의 글로벌 조화 및 판정근거의 정당성 제언		⊗	⚡
	3 연구개발 면제 물질의 사후처리 결과보고서 합리화		⊗	⊗
	4 살생물제품 승인 시 향료에 대한 유·위해성 자료 제출 및 면제 조건에서의 성분의 함량 기준 설정 요청의 건		🕒	⚡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영업비밀 물질별 신청		⊗	⚡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화장품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화학물질의 대체명칭 작성 방법 변경	✔	✔
	7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규제 해소	🕒	🔄
	1 규정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도 재검토	✖	✖
	2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제 도입	🕒	🔄
	3 화장품 표시 광고의 표현 범위 확대	✖	🔄
	4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준의 오차 허용치 적용	✖	🔄
	5 수입화장품 해외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 완화	✖	✖
에너지 및 환경	6 소비자에게 수송하기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유예기간 추가	📉	✔
	7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에서 '재활용 포장재'는 적용 제외	🕒	🔄
	1 육·해상풍력을 위한 월별(혹은 분기별), 전압별 전력 계통 및 연계 관련 정보 공개 방안 필요	🕒	🔄
	2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완화	✖	🔄
	3 육상풍력 전기사업허가의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필요	✖	🔄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규정 개선	📉	🔄
	5 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개선	✖	🔄
패션 및 유통	6 해상풍력 주민참여사업 확대 적용	✖	🔄
	1 금속장신구 납 함량 기준	🕒	🔄
	2 유아용 섬유 제품의 안전확인 시험결과 상호 인정에 대한 시험기관간 계약	✔	✔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식품	3 QR코드 사용을 통한 상품 정보 표시	🕒	🔄
	4 제품의 수선 및 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	✔	🔄
	5 제품의 수선 및 품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	✔	🔄
	6 가정용 섬유제품 취급상 주의사항 생략	🕒	🔄
	7 브랜드 전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 집기에 대한 관세 감면	✖	🔄
	1 축산물 가공품의 '수입위생평가' 검토 소요 기간	✖	✖
	2 재생 원료 사용 식품 용기 허용 기준 마련	🕒	🔄
헬스케어	3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	✖	🔄
	1 혁신 가치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	🔄
	2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대상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	📉	🔄
	3 희귀 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대상 확대	✔	✔
	4 현재 운영중인 약가제도의 절차 개선	📉	🔄
	5 혁신적 백신의 가치 인정 및 신규 도입 절차 개선	✔	🔄
	6 예방접종 시행비 개선을 통한 다가 혼합백신 및 접종횟수를 줄인 백신에 대한 장려 방안 강구	✖	✖
	7 전자적 정보제공(e-label) 시범사업 일반의약품 확대	🕒	✖
	8 전문 의료인 교육을 위한 사용 전후 사진 활용	✖	✖
	9 다종미생물검사인 다종그룹 1호흡기바이러스 신속검사에 대해 진검전문의 판독 조건 완화	✖	🔄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10 코로나-19로 인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원가 상승 및 환율 변동 수가에 반영	✗	🔄
보험	1 금융분야 클라우드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	✔
	2 개발/테스트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	✔
	3 계약자 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을 위한 손생보 참조순보험요율의 교차 선택 허용	✗	🔄
	4 경미 사고에 대한 진료기준 명확화	🕒	🔄
	5 과잉·확대수리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입법촉구	✔	🔄
	7 IFRS17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인한 배당 제한	✗	🔄
지식재산권	1 금융분야 클라우드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	✔
	2 개발/테스트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	✔
	3 계약자 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을 위한 손생보 참조순보험요율의 교차 선택 허용	🕒	🔄
	4 경미 사고에 대한 진료기준 명확화	✔	✔
	5 과잉·확대수리 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입법촉구	✗	🔄
	7 IFRS17자본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인한 배당 제한	✔	✔
주방 및 소형가전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 부적합 판정 이후 정밀검사 개선	✔	✔
	2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5주년 주기 정밀 검사 제도 개선	🕒	🔄

	이슈	정부부처 평가	ECCK 조치계획
	3 제품 수리를 목적으로 재수입하는 주방용 기기부속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표시사항 면제	✗	✗
	4 분리배출 표시 재검토 및 플라스틱류 표기 국제화	✗	✗
	5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정보의 표시 위치 개선	✔	✔
	6 가정용 저울의 검사 기준 완화	🕒	🔄
물류 및 운송	1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	🔄
	2 점진적인 연안운송 기회 확대	✗	✗
	3 항만 운영을 위한 친환경 정책 체계 도입	✔	✔
조선 및 해양	1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Vessel)과 관련된 외국 선급협회에 대한 불공정한 비즈니스 기회	✗	🔄
지속가능성	1 녹색 금융과 관련된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후전환 계획의 개발	✔	🔄
조세	1 UTPR(소득산업보완규칙)의 도입	✔	✔
	2 단일세율 적용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 제외	✔	✔
	3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	🔄
관광산업	1 서비스 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제도 활성화 방안	✔	🔄
	2 호텔 및 외식업계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산물 옵션의 공급 확대	✗	🔄
	3 관광 및 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방안	🕒	🔄
	4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에 관한 현지 규정 도입 및 개발	✔	🔄
	5 관광 부문의 연결성 및 환승 옵션 개선	✗	🔄
	6 호텔 옥외광고물 제한	✗	🔄

1

총 주요이슈

1. 산업협력 할당제 (컨소시엄) 요건에 대한 개선

이슈요약

해외의 방산 기업이 한국의 방산 물자 조달 입찰 시, 한국 정부로부터 무기체계 생산의 일정 부분을 국내업체에 할당하도록 하는 컨소시엄(이전에 '산업협력 할당제'라고도 불린 바 있음)을 요청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유럽 방산업체는 이러한 컨소시엄 요건이 향후 방산 물자 조달 시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컨소시엄에 대한 요건은 한국 정부에서 구입하는 해외 방산 물자 생산에 대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외 방산 기업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 입찰 시마다 자격을 갖춘 새로운 한국 협력업체를 발굴해야 하는데, 이는 해외 방산 기업에게 기존의 제조 분담 구조 및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신규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국내에 신규로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제조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단순히 일회성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방산기업 및 한국 정부에도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산업 구조에서 상당한 수준의 개방성이 있을 것임을 고려할 때, OEM은 모든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고 이는 자체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의 일부는 한국 협력업체에도 전가될 것이며, 이는 한국 협력업체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향후 방산 물자 조달 절차부터는 컨소시엄 요건을 면제 혹은 삭제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만약 컨소시엄 요건의 삭제가 어렵다면, 해외 OEM의 글로벌 공급망에 존재하는 국내 공급업체가 참여하여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ECCK 산업별 위원회 보고서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절충교역지침 제 15조 제 7항
방위사업청
신규

임창훈
부장
자동차 위원회

자동차

7

총 주요이슈

1.

한-EU FTA 에서의
기술규정 인정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이슈요약

현재 한-EU FTA부속서 2-다에서 유럽연합의 자동차 기술규정을 인정해 주는 항목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이로 인해 유럽의 자동차제작자가 한국 사양의 자동차를 별도로 개발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 유럽의 안전 기준을 조화시키고 또한 '한-EU FTA 부록 2-다-3'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규정 번호 업데이트 :

EU/UN 규정 및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자동차규칙)이 개정되었으나, 한-EU FTA의 부록 2-다-3과 별표4에는 개정되기 전의 규정 번호가 존재합니다.
예)

기술규정		개정 전	개정 후
등화장치	유럽	UN-R4, 6, 7, 23, 38, 50, 77, 87, 91	UN-R148
		UN-R19, 98, 112, 113, 119, 123	UN-R149
		UN-R3, 27, 69, 70, 104	UN-R150
연료장치 (후방충돌)	한국	자동차규칙 제91조	자동차규칙 제91조의2, 제91조의3
	유럽	UN-R34	UN-R153
전자파 적합성	한국	자동차규칙 제111의2	자동차규칙 제107조

- 한-EU FTA 부록 2-다-3 및 별표 4에 기준이 이미 조화된 규정들을 추가 예)

기술규정	한국	유럽
고정벽 정면 충돌	자동차규칙 제102조의3	UN-R137
기동 측면 충돌	자동차규칙 제102조의4	UN-R135
저속음 자동차 경고음 발생 장치	자동차규칙 제53조의3	UN-R138
좌석안전띠 장치	자동차규칙 제27조	UN-R14, 16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자동차규칙 제12조의2, 제 88조의3	UN-R141
창유리	자동차규칙 제34조	UN-R43, GTR6

- 유사한 규정에 대한 기준 조화 예)

기술규정	한국	유럽
후방보행자 안전 장치	자동차규칙 제53조의2	UN-R158
연결 장치	자동차규칙 제20조	UN-R55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3년도 ECCK 백서를 통해 건의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계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각각 수용불가 및 장기검토의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한-EU FTA 부속서 2-다의 제3조에 따르면, 양 당사자(한국, 유럽연합)는 적어도 3년마다 이 부속서의 부록 2-다-2 및 2-다-3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규정을 감안하여 부록 2-다-3 업데이트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EU FTA 부록 2-다-3에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개정된 규정 번호 반영, 조화된 안전 기준들의 추가, 한국과 유럽의 기준 조화 등).

관련규정	한-EU FTA 부록 2-다-3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 제출의 대상 차량 범위

이슈요약

자동차제작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항을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대상이 되는 차량 범위를 현실성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는 2025년 8월부터 자동차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 국내에 통관된 시점이 자동차가 '제작'된 시점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 시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자동차를 통관한 이후에 발생하는 업데이트 사항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 국내에 통관이 되면 차량을 소유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필요한 여러 차량 점검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점검과 국내 시장에 맞는 편의사항 제공을 위한 작업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제출 대상이 통관 이후에 발생하는 업데이트 사항으로 적용된다면 수입 자동차 제작사가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이에 따른 제작사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거나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운행되고 있지 않은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려 하여 이를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를 '자동차가 등록된 이후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5 제2항 및 하위법령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의 마련

이슈요약

자동차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대해 국내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제작자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절차가 국내 관련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자 측에서는 특례의 신청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국내 도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EU FTA의 관련 조항(한-EU FTA 부속서 2-다, 제6조)에 따르면, 신기술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신기술에 대한 인정 절차에 있어서 과도한 지체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3년도 ECCK 백서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2024년도 상반기에 관련 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현재로서는 해당 규칙 개정 및 시행 시점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에서 신기술 특례를 받는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주시고 이에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건의사항

자동차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해 국내에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의 2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 준수를 위한 유연성 부여

이슈요약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차량의 대당 평균 배출량을 관리하는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 : Fleet Average System)에서 자동차제작자의 보다 원활한 규제 준수를 위해 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를 통해 제작자의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제작사별로 매년 판매된 차량 전체 배출가스의 평균 배출량이 환경부가 정한 기준의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자동차제작자는 평균 배출량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에 집중함으로써 배출량 평균을 낮춰 기준을 준수해 오는 전략을 수립 및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기 FAS 기준 도입시에는 전기자동차가 평균 배출량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그 동안 전기차 개발 및 판매에 투자하여 평균 배출량을 준수하고자 했던 제작사들은 변화하는 제도에 따라 사업 전

략을 급격히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평균 배출량 제도는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는 FAS에서 축적된 초과실적 (Credit)을 제작자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사들이 급격한 기준 변화에도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차기 FAS 기준에서 예상되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대해 제작사들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사간 Credit 거래의 허용이나 혹은 제작사가 변경된 제도에 맞춰 차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에서 제작사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 달성하여 축적한 초과 실적분을 제작자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과분(Credit) 거래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

만약 초과분 거래와 같은 유연성 제도가 적기에 시행되기 어렵다면, 차기 FAS 기준에서 급격한 제도 변경으로 제작사가 신규 제품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화될 제도 시행 전에 최소한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 2
관련부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의2] 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전기차 보조금 평가 혹은 광고 목적 자동차에 대한 관리 기준의 개선

이슈요약
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평가 시험용 혹은 광고/전시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는 국내에서 판매가 불허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제작자는 전기차 보조금 평가 시험(특정 전기차 모델에 대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혹은 광고 및 전시를 위해 자동차 인증을 면제/생략 받고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된 자동차는 이후 해당 자동차의 모델이 인증을 받게 되더라도, 최초의 수입이 인증을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를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를 다시 해외로 수출한 뒤 재수입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폐차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비용 초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3년 ECCK 백서를 통해서도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인증 시험용으로 수입된 차량은 해당 자동차 모델이 추후에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서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으나, 광고/전시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증 시험용 차량은 인증을 받은 차량과 동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증서의 효력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광고/전시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배출가스 인증서 적용을 인정)해 주시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건의사항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평가 시험 혹은 광고/전시 목적으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모델(Model Family)이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
환경부
개정

6.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이슈요약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자동차에 비해 운행되는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량이 많으므로, 친환경 중대형차 보급 촉진은 교통부문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유럽계 화물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전기 화물차의 조속한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의 관련 제도 및 인프라 부분에서 친환경 상용차의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기 승합자동차와 수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조금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또한, 중대형 전기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용 충전시설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중대형 전기 화물차 전용 충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본 건의 사항은 2023년도 ECCK 백서를 통해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장기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현재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평균 온실가스 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6년도부터 판매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 화물차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제도를 유럽 자동차 제작사가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대형 전기 화물차 보급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트랙터와 같은 특수자동차 포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의 마련 및 시행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중대형 화물자동차 전용 충전시설의 확충과 충전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환경부
재건의

7.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등재 절차
개선

이슈요약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저공해/무공해 자동차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이하 '환친차')로 지정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에서, 환친차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저공해/무공해차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친차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환친차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차종이 관련 고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등재되어야 하며, 고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환친차 등재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제작사는 전기차 등을 적기에 시장에 보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제작사가 환친차를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환친차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관련 고시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환친차의 구체적인 차종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도록 고시에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사항

환친차 등재를 위한 절차를 현행 고시 개정 방식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유사한 웹사이트 등재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재건의

주류

3

총 주요이슈

1. 모든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 상거래 기회
확대

이슈요약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던 지난 몇 년간 온라인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소비자의 온라인 구매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식음료를 포함한 구매가 늘어나 주류 구매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전통주에만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전통주가 아닌 국내 주류판매업체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주류산업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주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해외 온라인 마켓과 판매자로부터 소비자 직구를 통해 '수입'된 주류는 무려 395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로, 위스키 수입은 120배나 급증했습니다¹. 해외에서 주문한 와인과 주류는 한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고 있으며, 전통주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주류 전자상거래에 대한 금지는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전통주(및 해외에서 주문한 수입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면, 같은 이유로 국내 와인과 주류의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입니다. 기존과 유사한 강력한 연령 확인 및 규제 등을 다른 유형의 주류에도 구현한다면 주류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 음주 위험을 본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소매 허가를 가진 소매업체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성과 선호도를 충족시키며, 고물가 시대에 가격을 낮추고, 소규모 제조업체가 모든 한국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시장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계속되는 주류 전자상거래 제한과 제품 카테고리 간의 차별은 공정 경쟁 원칙에 반하며,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모든 주류 소매 허가

소지자에 대해 주류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접 배송 허가 및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주류 산업은 전자 상거래 채널을 통해 책임 있는 음주를 지원하고, 특히 음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유해한 음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류 전자 상거래를 확대함에 따라 대중의 우려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책임 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 International Alliance for Responsible Drinking)' 표준²과 배송 교육 프로그램 등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합니다. 당 상의 주류위원회와 회원사들은 관련된 지침과 프로그램을 한국 시장에 맞게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당 상의는 주류의 전자상거래는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주류에 대하여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차별적인 상황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https://www.iard.org/actions/ECommerceStandards>

관련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주세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국세청 소비세과 재건의
-------------------------	---

2. 국제 표준 및 관행과
합치되는 주류 라벨
규정 도입 요청

이슈요약

기업들은 소비자가 그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류업계는 에너지 및 원재료 정보 등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은 8개 부처가 관장하는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로 인해 이런 선제적 접근방식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의 규제 체계는 각 부처가 주류 라벨 표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정책을 가지고 있어 산업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나의 부처에서 개정을 하는 경우, 8개의 부처 전반에 걸쳐 (비)조정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ml, 350ml, 200ml과 같은 소형 포장 사이즈의 증가 추세는 각 부처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정보와 더불어 주류 라벨 표시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국제적인 라벨 크기 내에서 필수 정보를 인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국내 라벨 재작업이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라벨은 이미 다양한 부처에서 요구하는 정보로 가득 차 있어 소비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의 개정으로 주류업계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하고 글자 크기를 늘리도록 요구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필수적인 정보들을 찾기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계 주류 산업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직관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선제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QR코드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 사용은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유익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어 자료의 수집과 확인에 대한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주류 표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때 국제 표준 및 관행들에 보다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는 편리한 방법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들을 지원하게 되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주류 표시사항을 간소화하고 규제 비용을 줄이며 이행이 용이한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된 거버넌스 과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류 위원회는 8개의 부처가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기구에 권한을 부여하여 부처와 산업간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라벨 및 디지털 라벨의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를 건의합니다.

주요 정보

목록	유럽	미국	한국	제안
상품명	○	○	○	
주종(식품유형)	○	○	○	
알코올 함량	○	○	○	
내용량	○	○	○	
원산지	○	○	○	
원재료명	△	△	○	
1회 권장량 당 열량	△	△	△	개선(총 내용량 → 1회 권장량)
고객 상담실(CS) 연락처	△	△	○	
19세이상 판매금지 및 임산부, 과도음주 경고(이미지)	△	△	△	개선(이미지가 인지에 더 효과적)
수입업자명	△	△	○	
제조사명	△	△	○	

추가 정보

목록	유럽	미국	한국	제안
보관방법	X	X	○	삭제
소재지 상세정보	X	△	○	삭제 또는 일부 개선 (CS연락처로 통일)
교환 또는 반품 정보	X	X	○	
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X	X	○	
포장재질	X	X	○	삭제 또는 개선
19세이상 판매금지 문구	X	X	○	개선
임산부, 과도음주 경고 문구	△	○	○	
분리 배출 표시 로고	△	△	○	
책임 음주 문구	△	△	△	
주류의 용도(가정용 등) 표시	X	X	○	개선

관련규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발효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이슈요약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한국은 주류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류 과세에 대한 글로벌 모범사례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내 경쟁력,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대하고,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품질 향상을 장려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모든 발효 주류(과실주)에 종량세 제도를 확대할 기회가 왔습니다. 발효 주류(과실주)제품으로의 확장은 제품 내 다양성과 알코올 함량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명료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증류주에 종량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주종에 걸쳐 일관되고 공정한 과세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발효 주류(과실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종량세 시스템의 확장은 한국 주류 산업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와 합의를 얻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주류수입협회,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한국증류주협회, 한국와인생산협회, 한국위스키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종량세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이 제도개선이 단순히 선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업계 전문가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광범위한 지지는 종량세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점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반영합니다.

종량세가 정부 세수의 감소 없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수 흐름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량세를 적용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일관된 세금 부과를 보장하고, 수입 구매 가격의 과소 신고와 해외 개인 구매의 국내 재판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종량세는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OECD, IMF의 지지를 받는 글로벌 모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주류 세제를 채택하면 광범위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적 역량과 산업 간 시너지 발생으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창고업, 물류, 교육, 관광 및 서비스업 등의 산업의 발전을 통해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종량세 적용의 범위를 모든 발효주류(과실주)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식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성을 구축하여 한국의 과실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제품의 품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경험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더 높은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지원이 되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주세법 개정작업이 일관된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이해관계자(국세청, 업계 등)들과 함께 종량제 전환을 위한 실무 TF를 만들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규정	주세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국세청 소비세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김경현
매니저
화학 위원회

화학

7

총 주요이슈

1.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확인서류
서명 주체 확대

이슈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 시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 (Letter of Confirmation, 이하 'LoC')'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외제조자(본사)의 서명 및 직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외제조자가 정보제출을 선임한 자인 한국지사의 서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외제조자의 한국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물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성분을 확인할 수 있고 하위사용자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등록된 물질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대응은 한국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LoC 등 화학물질 관련 서류에는 국외제조자 본사의 서명 또는 직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제48조의4(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가 신설되어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련 확인서류에 국외제조자로부터 정보제출을 위임한 한국지사 및 이와 유사한 주체의 서명 또는 직인도 인정하도록 인정 범위 확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국내 제조 제품의 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 허용

이슈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2항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하 ‘GHS 비유해성분 정보’)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수입하려는 자에 한하여, GHS 비유해성분 정보 제출을 국외제조자가 발행한 LoC을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화학산업계에서는 GHS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MSDS를 제공하고 있어, 하위사용자가 GHS 비유해성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업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제조자’에게만 GHS 비유해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내 제조업에게 불리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수입자’와 ‘국내제조자’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GHS 비유해성분 정보’가 요구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외제조자’에게만 허용된 LoC 발행 및 제출을 ‘국내제조자’에게도 허용하거나 혹은 대체자료로서 원료물질의 MSDS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 현실화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7조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안

이슈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도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에서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중복·규제 부담을 줄이고자 신규화학물질을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위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명시하였습니다.

이 규칙의 시행으로 업계부담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화평법과 산안법에서 규정하는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정의가 조금씩 달라 양 법규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등에 있어서 혼란이 남아있습니다. 화평법은 법 제2조 3호 및 환경부고시 2023-122호 3조로서 기존화학물질을 정의하고 있으나, 산안법에는 기존화학물질 정의가 없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의 화학물질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목록은 위의 화평법상 정의의 범위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안법상 등록/면제 대상이 화평법과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업체는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이점을 파악하였더라도 산안법만 적용 받는 물질에 대한 등록제출자료, 시험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도 다국적 기업들과의 일자리위원회 간담회 중 신규화학물질 등록 부분에 대해 건의한 바 있으며, 이때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는 2018년내 법령개정안을 추진하여 2020년 일원화 시행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한 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신규화학물질의 정의가 상이함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감안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과 평가는 화평법에서 진행하고, 산안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부분 삭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산안법 상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규정이 필수적이라면 산안법에서 정의하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에 화평법에서 고시하는 기존화학물질이 모두 동일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85조 유해성 위험성 조사제외 화학물질 규정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2024-2호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부고시 2023-122호
관련부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 규제해소

이슈요약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유사한 규정이 화평법에도 있어, 중복규제를 해소하고자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평법 제11조의 등록 면제와 산안법 시행규칙 제150조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이 상이하여 산업계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면제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대상 물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표면 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건의사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150조를 삭제함과 동시에 제147조 제1항을 개정하여 화평법 상 등록 및 면제를 받은 경우 산안법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면제를 확인받은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기를 건의합니다.

산안법의 조사보고서 제출 제외 확인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두 부처가 협의하여 환경부로부터 등록 면제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범부처 시스템의 마련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제1항, 제150조, 제151조 제1항

관련부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재건의

건의사항 조치현황

5. 동일 물질에 대한 OR 및 수입자 병행 등록 허용
- 이슈요약**
국내사업자가 기존에 '국외제조자(A)'가 선임한 자(이하 'OR')로서 '화학물질(X)'을 등록했을 때, 추가적으로 국적과 법인이 모두 다른 '국외제조자(B)'로부터 동일한 물질(X)을 수입하고자 수입자로서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B가 제조하는 물질X에 대해서도 OR로 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OR로 등록한 모든 건들을 취소하고 수입자로 재등록해야 한다.
 - 이는 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분할하여 낮은 톤수로 등록하는, 이른바 '물량 쪼개기'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 기존에 수입자로 등록한 물질을 OR로서 추가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건의 하위 톤수 등록비용을 분할하기보다는 상위 톤수 한 건의 등록비용이 덜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분할 등록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공급자를 다양하게 두어 화학물질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은 산업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타 국가와의 경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OR로 등록한 건을 취소할 경우, 해당 등록건의 수입자들은 '이미 환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동일한 독성자료'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의 자료 소유자에게 막대한 외화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EU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U REACH)의 경우, 기존에 OR 또는 수입자로 등록되어 있을 때,

다른 제조사의 동일 화학물질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 수량을 나누어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한 업체가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자 또는 OR로서 등록·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부처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前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요청

이슈요약

올해 과학원이 공지한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안내문(이하 '안내문')'에 따르면 제형·용법상 흡입노출 경로가 있을 경우, 제품 내 함량이 0.1% 미만인 성분만 유해성 자료 제출이 면제되지만, 위해우려물질(함량 무관) 및 알레르기물질(함량의 총합 0.01% 이상)은 노출 경로 등에 관계없이 유해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들은 최초 요건보다 강화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이를 준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승인유예기간이 25년말인 1그룹 제품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 생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유해성 분류표시만 있어도 인정되는 지 혹은 분류표시의 근거가 되는 결과값을 포함한 원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등 안내문에 명시된 유해성 자료 인정범위 역시 불분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생활화학제품 요건에 비해 과도한 요건으로 여겨집니다. 기존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및 신고 제품에 함유된 향료는 이미 수년간 소비자 제품으로 판매되어 왔으나, 살생물제품으로의 이관단계에서 위의 요건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반 생활화학제품은 유독물질, 알레르기 성분 등에 대한 유·위해성 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살생물제품은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료 구비에 업계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보안 요청 시 저작권 우려가 없는 자료나 자료의 참조권 구매 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어 업계에 큰 부담 및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제품 내에 향료 및 알레르기 성분들이 총합이 아닌 개별 성분으로 각각 0.1%, 0.01%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유해성 자료 제출 대상으로 범위를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일반 생활화학제품 안전 기준과 같이 살생물제품도 제품 내 함량 기준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요청도 건의합니다. 과학원에서 업계의 자료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Harmonized C&L은 없지만 REACH에 등록된 C&L의 분류표시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분류표시나 독성값을 확인할 수 있는 REACH 공개자료(url 등)를 활용하여 유해성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Research Institute of Fragrance Materials (RIFM) 등의 출처에서 분류표시나 독성값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자료(url 등)를 참조권 구매 증명서 등과 같은 추가자료 제출 없이 유해성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환경부에서 이미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들은 유해성 평가에 사용된 end point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안내문(국립환경과학원, 2024.04.18.)
관련부처	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 (前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7.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제한·유독물질의 수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중복규제
- 이슈요약**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및 20조에서는 금지·제한물질 및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수입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동법 제54조에 따라 각각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신청 수수료 13,000원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위의 허가 및 신고 건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18,000원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위의 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이는 연구용 시약 등 다양한 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건의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동 법에서 품목이 아닌 허가증 단위로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의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 품목마다 등록면허세 각각 납부하는 조항의 삭제 또는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와 [별표1] ● 화학물질관리법 제18, 20, 54조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환경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박안숙
상무
화장품 위원회

화장품

4

총 주요이슈

1.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요건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

이슈요약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심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심사 세부 사항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적용되거나 기존 심사 관행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논의 및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품 출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지수 등급 설정을 위한 ISO 측정 방법을 최신 버전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지침이 2023년 10월 24일 전달되었으나, 종전 버전에 대한 인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험기관에 의뢰한 경우 또는 2024년 2월 29일 이전에 민원 접수된 품목에 한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최신 버전 이외 종전 버전 또한 사용 가능하며, 최신 버전 이행 기한에 대해 별도 고지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외선 차단 시험이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험법의 변경과 같은 사항은 계약 변경과 일정 조정 등 사전 조율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측 불가능한 지침 변경은 사업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건의사항

규정에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심사 세부 사항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경우 및 기존 심사 관행이 변경되는 경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및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2. 기능성화장품
탈모 완화 효능의
인체적용시험 기간
축소

이슈요약
증상 완화 화장품은 현행 화장품의 정의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며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와 화장품법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의 품목별 정의(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기반하여, 개선과 치료가 아닌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과 효능 범주를 고려하였을 때 현행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상에서 안내되는 필요한 시험 기간(최소24주)은 허용되는 효능 범주에 비해 다소 과도한 조건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의약품인 ‘발모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12주차 총 모발 수 개선을 측정이 포함되며, 임상시험 설계 중 약리효과의 확인과 적정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치료적 탐색 시험에서도 12주 수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 시 24주 시험 기간이 요구되는 화장품의 효능 검증 평가 방법은 소구 가능한 효능·효과 표현 대비 다소 과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도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으로 (유럽, 중국: 12주 등) 해외에서 수용되는 자료일지라도 국내에서는 활용이 어려워 업계에서 자료 활용 및 마련에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허용되는 효능의 범주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24주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기간 (예: 최소12주) 이후 효능이 발현된다면, 그 효능이 확인된 자료가 제출 가능하도록 시험 기간 관련 수용 조건을 확장해주시길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자외선차단지수 (SPF)
표시 범위 확대

이슈요약
식약처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2항 1호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SPF)는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소수점 이하 절사)으로부터 -20%이하 범위내 정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SPF 측정결과는 시험하는 기관, 피험자, 시험법, 제품의 종류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추후 시장에서 SPF 값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시험결과 값보다 더 낮은 SPF 값을 정하고 있으나 식약처 고시에서는 이를 -20% 범위내 정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낮은 SPF 값의 선택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소비자 사용시 우려가 없다고 평가, 판단될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건을 확장하여 해외 국가의 표시와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SPF 값이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소비자 사용시 우려가 없다고 평가, 판단될 경우 기업이 실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범위내 정수 표시에 대한 조건을 확장하여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평균값(소수점이하 절사) 이하 정수로 표기’로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화장품 표시 광고 행정
처분의 완화

이슈요약
현재 국내 화장품법상 표시·광고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품목의 판매 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의 광고 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해당되는 표시·광고 문구 또는 표현의 수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 전체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전체에 대한 광고 업무 정지라는 행정 처분은 상대적으로 과도합니다. 이는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산업에 긍정적인 광고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 전체에 적용되는 제재보다는 문제가 된 표현만 수정 혹은 삭제제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약처 규제혁신 3.0의 핵심 과제로 선정된 표시 광고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의 일종으로 행정 처분 수위에 ‘시정 명령’이 추가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럽과 중국 규제 당국의 관리 방안의 경우, 표시 광고의 부적절한 표현이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표현만 수정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 광고한 경우, 해당되는 표현만 삭제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1차 위반 처분 기준에 '시정 명령'을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화장품법시행규칙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김경현

매니저

디지털 위원회

디지털

2

총 주요이슈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개선안

이슈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난 2월 행정예고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요건들은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이하 'CSP')들의 기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기관 및 CSP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개정안의 각 요건은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망 분리는 클라우드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중 테넌트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른 클라우드의 주요 장점을 상쇄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관련 서비스, 그리고 관리인력을 국내에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지 못하며, 사이버 보안에는 데이터 상주위치를 넘어서는 더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요건으로서 국가표준암호화 기술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최첨단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여러 CSP에게 비실용적입니다.

건의사항

따라서 공공기관이 취급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 등급 및 '중' 등급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 분리, 데이터 및 관리인력 현지화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국가표준암호화 기술은 '상' 등급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만 요구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암호화 기술(예: FIPS 140-2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암호화 기술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의 소스 코드 공개 요건도 '상' 등급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2.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안

이슈요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 및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여 소비자 경험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 중 많은 부분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수의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신생 제품/솔루션 공급자들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영체제(이하 'OS')의 서드파티 앱/콘텐츠 개발자는 플랫폼 자체 앱 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없어 플랫폼 사용이 강제되는데, 플랫폼은 이들에게 수익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S 자체 앱을 서드파티 앱보다 우선시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소비자가 기본 설정을 변경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주변기기는 OS에 대한 기술적 정보가 필요한데, 주변기기 제조사가 OS 제공자의 계열사인 경우 OS에 대한 기술정보가 모두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제조사는 제한적인 기술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메시지 표준(RCS)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간에 메시지의 상호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의 OS에서 다른 OS를 사용하는 기기로 자신의 데이터(사진, 파일, 음악 등)를 옮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EU 등 자국 법령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채택하여,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 CPS) 제공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을 통과시켜 '24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본 또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이 가결되어 오는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

급변하는 디지털 흐름에서 현행 반독점법 또는 공정경쟁법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배적인 모바일 OS 플랫폼 업체의 행동에 대한 사전감독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 회사에게 법적으로 명확하고 사전에 정의된 의무사항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규

에너지 및 환경

10

총 주요이슈

1.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제안

이슈요약

2023년 ECKK 백서 에너지환경 안건 1번 계통연계 정보 공개 방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의 회신내용에 의거하여, 풍향계측기를 신설할 단계에 있는 사업은 한전의 정보공개 창구를 이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통 정보 공개 대상, 범위 등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계획 내용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은 고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발전사업허가를 위해 풍향계측을 위한 투자 (토지임대/매매, 인허가, 계측기 설치 등)를 결정하기 전, '사전검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일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 시행령 제33조]에 법정 민원 중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 신청하기 전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제도를 바탕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통연계 정보에서도, 발전사업허가 신청 전에 접수/요청할 수 있는 기술검토 창구 혹은 절차가 마련된다면 아래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의지와 개발 가능성을 갖춘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 및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예측전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후 송전설비이용계약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투자확약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한국전력공사
개정

2.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구체화

이슈요약

2022-2023년 발전사업허가 보류의 주된 사유가 주민수용성 확보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허가의 심사기준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
- 2)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별표1] 심사기준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위와 같은 사유로 검토기관(지자체)의 판단 기준과 근거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도 개발행위허가에 상응하는 단 하나의 인허가 절차만 차용하여 개발과 주민수용성 확보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은 발전사업허가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유지에서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직접 연관이 있는 개별 토지주의 동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대상 마을 주민 대표자 혹은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담보로 하는 아래 기준을 건의합니다.

-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마을의 읍/면/동 마을대표자(이장 혹은 같은 직위) 대상 주민설명회를 최소 1회 개최한 후, 해당 마을 대표자들의 의견을 접수합니다. (사업자의 요청 시 지자체에서 일정 조율, 설명회에 지자체 배석, 찬반 접수가 아닌 의견 접수가 목적입니다.)
-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마을의 읍/면/동'을 '사업지 경계로부터 반경 1km 내 마을의 읍/면/동'으로 거리를 표기하여 해당되는 마을을 한정합니다.
- 접수된 마을 대표자들의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대책 방안이 제시될 경우, 발전사업허가의 보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 수용성 확보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별표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개정

3.	이슈요약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구체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동의 관련: 2022년 7월 공유수면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신설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이후, 몇몇 허가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시 신청자에게 식별된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 및 식별 절차가 모호하고 어업인의 경우, 아무 증빙자료 없이, 수협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동의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 검토 시, 이해관계자 식별 및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동법 시행령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4.	이슈요약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현행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점유한 공유수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격에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은 서해 쪽의 해상풍력 단지와 비교시 수백/천 배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안에서 최대 약 100km 떨어진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육지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프로젝트의 경제적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산정기준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해상풍력의 입지는 경제성을 좌우하는 바람의 세기나 수심, 지질, 산업 기반시설과의 근접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례로, 영국, 미국의 경우 매출액 또는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점용·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합리적인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 변경을 건의합니다.
	(1안) 현재 지가 적용 방식 ¹ 과 매출 및 설비용량 대비 적용 방식 ² 중 점용 사용료가 · 저렴한 방식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상한가격 지정하여 사용료가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상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3안) EEZ지역에 대한 점용·사용료 산정 및 적용하는 방안

1.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최근
접 해안지역 토지 공시지가
기준
2. 발전회사 매출액의 일정비
율을 점용·사용료로 부과
하거나 발전단지용량(MW)
당 일정액을 점용 사용료로
부과

관련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이슈요약
군작전성 이슈 관련 사전 협의 행정기관 창구의 마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해서는 국방부 사전협의를 위한 행정기관 협조 ³ 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착공 직전 최종 인허가 단계(발전지역 전체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에서 레이더 차폐 및 작전 수행 지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을 경우, 사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업 위치 및 규모 등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풍력사업 진행에 매우 심각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 에 관한 협의 등	
	현재 이러한 사전협의를 위한 행정기관의 단일 창구가 부재하여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이 지방 해양수산청 및 지자체를 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 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협의 절차 시기의 조정과 단일 창구 개설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건의사항
	공사 착공용 최종 인허가 단계가 아닌 초기 단계에서 사전협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점용 · 사용허가의 사전협의)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현)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 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로 군작전성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국방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사전협의를 위해 국방부내 단일 창구를 개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3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방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6.	이슈요약
부유식변전소 규격 제정 검토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하면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유식 해상변전소와 관련된 산업부(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전기안전공사(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유식변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부유식 해상변전소에 대한 국내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활용되는 부유식 해상변전소를 위한 국제인증(DNVGL-ST-0145)⁴ 준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	---------------

7. 해상풍력설비의 가중치 변경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필요

이슈요약
해상풍력사업은 풍력고정가격계약입찰에 낙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과 Project Financing (PF)를 확정하는 구조입니다. 풍력고정가격입찰에서 사용 전 검사까지 약 4~6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가중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변경될 경우, PF가 확정된 이후에 가중치가 낮아지면 PF가 취소되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REC가중치 확정시기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를 안내받은 설비의 가중치는 해당 설비의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한다.

(개정(안)) 2. ‘예상가중치 검토 결과를 안내받은 설비의 가중치는 해당 설비의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한다. 풍력고정가격계약입찰에서 낙찰된 풍력발전 설비의 경우 입찰 선정 당시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기준을 준용한다. 단, 해당설비확인시 최종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검사가 끝난 발전단지의 수심/거리를 반영하여 확정한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신규
---------------------------	---

8. 풍력고정가격입찰 낙찰 시 복수의 Off-taker 와 계약 허용 필요

이슈요약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풍력고정가격입찰에서 낙찰되더라도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다수의 발전사업허가가 300~400MW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1(개발사):1(공급의무자)간 용량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의 지연 및 재정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풍력고정가격입찰에서 낙찰될 경우 1(개발사) : 多(공급의무자)계약이 가능하게 하여 복수의 공급의무자들이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4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신규
---------------------------	---

9. 300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용 전 검사 완료를 위한 기간 완화

이슈요약
현행 규정에 따르면, 풍력 경쟁입찰계약 고정가격 선정 사업자는, 100MW 초과 해상풍력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먼 바다에서 개발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60개월 이내에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없는 사유 등으로 설치기간 내 사용 전 검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풍력입찰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
6. 선정용량 100MW 초과: 회당 12개월 이내 최대 3회

2023년 백서 에너지환경 안건 5번 풍력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개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로부터 100MW 초과 사업 기준에 한하여, 일정 요건·절차⁵ 하에 기한 연장⁶을 허용하고 있어 이미 충분한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회신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 요건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의사항
설치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특성,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분할된 발전사업허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수의 개발사가 대규모 단지에서 동시에 개발에 참여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300MW 이상 해상풍력 또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용 전 검사 완료를 위한 기간을 최소 72개월 이상 부여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개정

10. 군사기지법 보호구역 사전검토 대상 확대 및 관련 훈령 개정

이슈요약
군사기지법 제13조3항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해당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네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기지법 시행규칙 제7조 6항에 의하면, 허가 등의 신청인은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처리를 위한 국방부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별표 -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에 전기사업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사전상담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군사기지법 제13조3항에 따른 사전상담 대상을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 관할 보호 및 제한 구역 전체로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관할 공항의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등이 있습니다.사업 계획단계에서 각종 제약사항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련의 협의대상 정부개발계획에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발전사업허가를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국방부훈령 제2175호 /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
관련부처	국방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강선영
매니저
패션 및 유통 위원회

패션 및 유통

4

총 주요이슈

1. QR코드 사용을 통한 상품 정보 표시

이슈요약

최근 글로벌 환경 보호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유통업체들은 QR코드를 통해 투명하고 자세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비대면 정보 제공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QR코드는 플라스틱 사용과 탄소배출 감소, 소비자 편의성 증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서도 QR코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 경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중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QR코드 사용이 특정 제품군에 한정되어 있으며, 제조일자나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식별 정보 제공에만 허용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상세 정보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렵게 어려우며, 기업에게는 정보 제공 방식을 다각화해야 하는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QR코드를 통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글로벌 환경 보호와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부합하여, 의류 제품의 표기 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QR 코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운영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 표기방법

이슈요약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품 인정 범위가 확대, 단순화되었으며,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추적 가능한 수입연월 항목이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중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중 신발류 제품에 대해 겔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중요정보를 개별제품에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발의 다양한 형태와 소재, 그리고 작은 사이즈를 고려할 때 이러한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입제품의 경우 한국만을 위해 별도의 생산공정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는 추가 생산공정으로 인한 생산 단가 상승과 소비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수입 신발 제품의 경우, 고유의 형태, 굴곡 및 깊이를 고려할 때 수입 후 완제품에 박음질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추가 박음질로 인한 제품 손상 및 생산공정 추가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수입 신발 제품의 품질 유지와 생산 효율성을 위해, '주 1. 겔감 재질,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 신발류 제품의 중요 정보는 6.1.1에 명시된 방법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라는 조항의 주 1. 부분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규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이슈요약

관세청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에서는 물품별 세부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HS3304), 향수(HS 3303)' 등은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지만, '거울(HS 7009), 브러시(HS 9603), 속눈썹 뷰러(HS 8203)' 등은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소매용 최소 포장에 이미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별표3] 기준에 따라 통관 전에 포장을 개봉하고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매용 최소 포장에 이미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3] 기준에 따라 통관 전 포장을 개봉하고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 중 물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작업은 추가 인력이 필요하여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거울, 브러시, 속눈썹 뷰러 등은 주로 소매용 포장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EU,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해 소매용 포장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포장에 표기된 원산지 정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정보이지,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거울, 브러시, 속눈썹 뷰러 등의 경우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가족제품 표시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이슈요약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부속서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제조연월, 수입연월, 최초시준번호 등을 표시하여 제품을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용 섬유제품, 선글라스 등의 제품류는 여러 표시사항을 허용하는 반면, 가족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제품은 그 특성상 다양한 제품이 빠른 주기로 출시 및 단종되며, 수입업체는 언어적·시간적 장벽으로 인해 제조업체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가족제품의 제조연월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의 취지상 제조연월 표시는 추후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추적하기 위함인데, 수입연월, 판매시점 등 다른 정보로도 해당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가족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업체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따라서, 가족제품의 경우에도 다양한 표시사항을 허용하거나, 제조연월일 표기와 관련된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업체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가족제품에 대해 제조연월뿐 아니라 수입연월, 판매시점 등의 표시도 함께 허용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 (가족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신규

윤신원
매니저
식품 위원회

식품

5

총 주요이슈

1.

수입식품 완제품에
사용된 물리적 재생
원료 사용 식품 용기
허용 기준 마련

이슈요약

지난 2022년 환경부가 시행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제도와 2중 검증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 제9조의 2가 신설되었습니다.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도에서 물리적 재활용의 적용대상은 국내에서 수거된 투명 PET 병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재생원료와 그것으로 제조한 완제품은 국내에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3 백서의 동일한 건의사항에 대한 환경부와 식약처의 답변에는 1) EU 식품접촉 재생플라스틱 규정(Regulation EU 2022/1616)에서도 EU 비회원국의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2) EU는 재활용 PET flake에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고 chip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만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U에서 EU 비회원국의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10.27 기준 승인이 완료된 한국의 Recycling Installations, Facilities, Companies가 각각 8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¹⁾ 또한, EU에서는 각각의 재활용 공정별로 승인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각 공정마다 점검 사항 및 그 기준이 세부적이며, flake에 대한 기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²⁾ (EU 2022/1616 Article 6, 7, 17).

따라서, 식품접촉 재생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규정은 EU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나 인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기준의 혼재로 무역장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EU등 해외에서 제조된 수입식품 완제품에 재활용 PET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 PET의 안전성을 증빙하는 심사 자료 등을 제출하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동등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국제 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기준 및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힘써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1) EU Regulation 2022/1616 Article 24에 따른 등록부 참조
- 2) EU Union register for countries located outside EU of technologies, recyclers, recycling processes, recycling schemes, and decontamination installations

관련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식품위생법-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관련부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수입식품의 '연월' 표시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방법 변경

이슈요약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수입되는 식품 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하 '소비기한 등') 표시가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에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식품은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후 국내 수입까지 해외 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해당 '월'의 1일까지로 표시하면 실질적으로 판매가능한 기간이 더욱 짧아지게 됩니다.

현재 소비기한 등이 상대적으로 짧은 제품은 본 표시 규정으로 인해 재고 관리, 판매 등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소비기한 등의 표시 규정에 의해 수출국에서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취식 가능한 식품이 국내에서는 최대 한달 일찍 폐기되어 자원낭비와 폐기물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물류의 전산화가 많이 진전된 현재, 제조사가 설정하여 물류 전산망에 입력한 소비기한 등이 본 규정에 의하여 국내 수입 시에 수입업자에 의해 수기로 재설정 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작업은 소분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 판매단위로 생산된 제품에 오표기를 발생시키거나 잘못된 재고 관리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건의사항

최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식품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소비기한 등의 표시 규정은 이러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월년'으로 소비기한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제조국에서 해당 월의 말일까지 소비하여도 식품 안전상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월년'으로만 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한 제품들입니다.

자원의 절약, 인적 실수의 방지 및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위하여 '연월'로만 소비기한 등을 표시한 경우 해당 '월'의 말일까지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

시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시 해외제조업소 공문의 인정 범위를 확대

이슈요약
2021년 7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등록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부터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되면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통관 지연이 발생하며 재고 부족, 창고 비용 부담 등 여러 부수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모기업이 여러 제조업소를 소유하며 관리하는데, 내부 관리 사유로 모기업명과 제조업소명이 일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 공장들과 구분을 위해 편의상 제조업소명 뒤에 지역명칭을 추가하는 경우가 유럽 등 제외국에서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모기업명으로 문제없이 수입하다가 개정 후 제조업소명을 정부 서류와 동일하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수입 이력 관리, 한글표시사항 전면 교체, 국내 유통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합니다.

건의사항

해외제조업소명 표시 기준은 수출국의 제조업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서류 중 해외제조업소 공문의 인정 범위를 아래의 경우에도 확대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가) 신청한 제조업소명과 수출국 정부 발행 서류의 소재지는 동일하나 제조업소명 일부 상이(지역명 추가 등)한 경우
- 나) 제조업소명과 소재지가 동일하다면 추가적으로 붙는 (유한회사 등의) 법인 유형 표시가 상이한 경우
- 다) 수출국 정부 발행 서류와 해외제조업소 신청서(동의서) 상 우편번호 등이 일치하여 소재지가 동일함이 확인되나, (행정구역명의 누락 등으로) 상세 주소가 상이한 경우

관련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식품안전정보원 수입식품시스템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4. 이슈요약
 내용량 감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재검토
 상품의 내용량이 감소한 사실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시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41호)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같은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공정위 고시')와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의 세부 내용에 일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관련 산업간 규제의 불균형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소비자에게 내용량 변경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공정위 고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방법과 함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및 제품의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지할 수 있게 하였으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업계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이미 불수용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에서 단위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출고가격은 수입 판매영업자가 납품을 위해 출고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출고가는 판매처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위 가격의 변동 또한 판매처별로 유동적일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방법외로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불필요한 비용 증가 및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정위 고시'는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수입제품의 경우 OEM/ODM 상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히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같이 제품에 표시하는 방법 외에도 영업자의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방법 및 제품의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고지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OEM/ODM 제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히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위 고시 가이드라인은 수입업자가 내용량 변경에 실질적 권한이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의 내용량 변경 표시 의무의 취지는 본질적으로 공정위 고시와 동일하게 사업자가 내용량 감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OEM/ODM 제품을 제외한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자가 내용량 변경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품의 실질적인 단위 가격 인상을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4-41호)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이슈요약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함과 동시에 백화점 매장 등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13] 행정처분 기준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 기준 1.12.라.목 에 따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정지는 해당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모든 영업행위 (수입 및 판매)을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는 품목(류)에 한정하여 제조정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과 도·소매업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판매가 중단되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모든 수입·도매판매를 정지함과 동시에 직접 운영하는 소매매장의 영업 활동도 정지됩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습니다. 반면, 마트 등 다른 소매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일 회사의 제품을 제약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판매업의 정의를 고려 시,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에 소매의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입식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식품등과 관련한 수입·판매업 영업의 범위를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7]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영업의 유형과 달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해서는 '보관창고'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는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식품판매업에 대해서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 이외에 별도의 '보관창고'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한하여 '보관창고'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타식품판매업(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과는 영업의 형태와 범위를 달리 보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 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의 직접 판매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기타식품 판매업자의 지위 또는 소매업자의 지위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입 식품등에 대한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처분 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입식품법과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범위 및 관련 시설기준 비교	
	수입식품법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상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범위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 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시설 기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 및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

건의사항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는 품목(류)에 한정하여 제조정지 처분 발생 및 식품위생법 대비 수입식품법상 판매업의 판매대상을 고려 시,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에 소매의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범위는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및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도매영업의 범위로 한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3]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수입식품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박안숙

상무

헬스케어 위원회

헬스케어

5

총 주요이슈

1.

혁신적 의료 제품의 가치 저하 및 불공정 경쟁 환경

이슈요약

유럽 헬스케어 업계는 여전히 환자 접근성, 투자 우호적인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시장 접근성에 있어 투명성, 예측 가능성 및 공정 거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은 여러 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영향을 우선시하며, 이로 인해 혁신치료제/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평원(HIRA)은 임상 효과에 대한 주로 보수적인 가정을 고수하며,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범위의 유연한 비용-효과성 임계값(ICER-threshold)이 반영되지 않아 혁신적인 약물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적응증을 갖고 있는 혁신약제에 대한 적응증별 임상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국적 헬스케어 업계에 대한 불공평한 경쟁 환경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환경에 큰 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다국적 헬스케어 업계는 한국에 대한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코로나 및 국제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및 운영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1. 이종혁 외 3인(2023),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 현황 분석 및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혁 교수가 2023년 10월 발표한 신약비 지출 연구'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내 신약에 대한 지출 수준으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혁신적인 신약 개발 제약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혁신에 대한 가치 인정이라는 FTA 협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기기/체외진단 산업의 경우, 한국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해외 의료기기/체외진단 기업들의 신속한 혁신 기술 도입보다 '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인허가 및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어서 불공평한 시장 경쟁 환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신약의 혁신성 평가에 있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단지 생존기간 연장에 국한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며 보다 넓은 범위의 임상적 개선을 인정하여, 한국의 글로벌 혁신 제품 패스트 트랙(GIFT), 미국의 Break-Through 지정(BTD), 유럽의 Priority Medicine (PRIME), 일본의 SAKIGAKE 등을 통해 승인받은 혁신 약제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비용-효과성(ICER-threshold)이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요, 질병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치 평가와 함께 혁신약제에 대한 다양한 적응증 별 임상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약가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관련 중증질환위원회 등에 해당 질환 전문가가 필히 참여하여 임상적 가치가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건의합니다.

의료기기/체외진단 산업 관련,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기준의 불공정성 개선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의 평가 항목 중 ‘나. 시장확대 가능성 - 국내 시장의 수입의존도 개선 항목’은 해외 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들의 공정한 시장경쟁 기회를 저해하는 평가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 또는 수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부속서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혁신에 대한 접근 (제2조), 투명성 (제3조), 규제 협력 (제5조)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 신규

2. 혁신 약물 가치 지속적 저하

이슈요약

국내의 중복적인 약가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약가 결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저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신약의 안정적인 공급계획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교 약가 하락으로 인해 향후 혁신신약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혁신신약 도입을 지연시키는 코리아 패싱의 가능성을 높여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 등재 약제의 사후 약가 평가 강화 일환으로 특허만료 약제에 대해 외국 약가 참고를 통한 약가 인하 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¹²를 통해 국내외 건강 보험 제도 및 약가 관리 제도의 차이로 인해 약가의 직접 비교에 여러 한계점 및 고려사항이 많다는 점이 알려져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제기한 절차의 투명성 및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고려 없이 제도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어 이로 인해 한국-EU FTA에서 합의된 제도의 투명성 및 차별 금지에 대한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 강예림 외 3인(2017),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가 사후관리제도 고찰 및 발전 방안, 약학회지, 61, 55-63
- 강대원 외 6인(2016), 외국 약가참조제도의 국제적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5(1), 9-15

건의사항

사후관리제도(PVA, IRP등)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혁신의약품 접근성 확대('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가치')에 재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가격 관련된 정책 개정에서 한-EU FTA에 따른 개정된 가격 정책 프로세스, 투명성 및 적법 절차 약속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외국약가참고(IRP)와 같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국 약가 참조에 있어 여러가지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나, 별도의 고시 및 규정 제정을 통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투명성 및 적법성이 확보된 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한EU FTA 부속서2-라(의약품 및 의료기기)-혁신에 대한 접근 (제2조), 투명성 (제3조), 규제 협력 (제5조)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3. 위험분담제 제도 개선

이슈요약

위험분담을 적용한 약제의 후속 약제는 위험분담 유형 평가시, 규정상 제한이 없음에도 선발약제와 동일한 위험분담 유형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특히 선발약제와 후발약제가 동일한 회사 품목인 경우 위험분담 변경으로 간주되고 다른 유형을 적용받기 어려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재정기반 위험분담의 경우는 위험분담 기간만료 재평가시, 계약기간의 환급 정보로부터 재정영향을 평가하여 위험분담 유형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초계약유형에 구속되어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적응증 추가 시 투여기간의 상이함 등 질환의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위험분담 적용이 필요함에도 기존 적응증과 동일한 유형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제네릭 등재 후 위험분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오리지널 약제의 지속적인 국내 공급의 어려움(제네릭 등재 후 실제가격 기준 53.55% 약제가격 인하)이 있습니다.

위험분담계약을 시행하는 혁신 신약의 경우, 환급 계약이 적용된 실제 가격이 아닌 환급 계약 적용 이전의 표시 가격에 대해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세 규정을 초과하는 차별적인 과세로 관련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재정기반 위험분담의 경우 선발 후발품목 간 다른 유형을 허용하고, 적응증 추가 및 재평가 시 위험분담 유형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검토 주체 등을

규정에 명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네릭 등재 이후에도 위험분담 계약의 지속여부를 공단과 협의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위험분담계약을 적용하는 혁신 신약의 경우, 환급 계약 적용 이후의 실제 가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4. 완전한 GMP 평가 상호인정과 품질관리시험 개선을 위하여 한국-EU 상호인정협정의 진행 및 생물학적 제제의 중복적인 품질검사 개선 관련 규정의 구체화

이슈요약
한국은 의약품 상호실사협력기구(PIC/S)의 회원국으로써 높은 수준의 품질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해 오면서 바이오의약품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그 수준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스위스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2024.02) 의약품 GMP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PIC/S 국가인 양국의 GMP 규제시스템 동등성이 인정되어 긍정적인 제약산업 발전이 기대되는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약품의 공급을 위하여 한-EU 간 상호인정협정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완제품 품질 시험을 개선하는 첫 단계로 2022년 ECCK 백서 중 '(백신포함) 생물학적제제의 중복적인 GMP 평가 및 품질관리 시험개선' 건의에 대하여 백신의 완제품 품질 시험에서 일부 동물을 사용하는 시험을 같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을 회신받았고, 그 결과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제26조 (일반적 사항) 제 2항, 식약처 고시) 이 개정('23.12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동물시험은 최종원액 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국내 제조업자에만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며, 수입사의 경우 상위 규정인 총리령,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에 반영되지 않아 수입사에서는 여전히 동물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완전한 GMP 평가 상호인정과 품질관리시험 개선을 위하여 한-EU FTA 협정문 (의약품, 의리기기 부속서 제5조 '규제협력')에 따른 한-EU 상호인정협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건의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품질/허가심사의 선진화와 동물시험을 줄여나가는 글로벌 기조에 발맞추어 개정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이 수입사에도

형평성있게 적용되어 일부 중복된 동물시험을 원제조원의 시험성적으로 같음 될 수 있도록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등), 5호에 원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의약품의 최종원액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또는 검정성적을 같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제60조 ①항 5호에 신설).

관련규정	● 한EU FTA 부속서2-라(의약품 및 의리기기)- 규제 협력 (제5조) ●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2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조정 제도의 조정을 개선

이슈요약

치료재료의 보험 급여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 상한 금액을 고시화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보건복지부고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022-231호」(별표2)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에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에 연동 조정하여 고시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조정 기준이 되는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율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 등급은 0등급(환율 1,100원 이상 ~ 1,200원 미만 구간)이며, 현재 100원 단위로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등급별 2%씩 상향 또는 하향의 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한금액 조정율은 환율이 오름에 따른 원부자재가의 상승, 수입 완제품의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실제 업계에서의 증가되는 부담에 비해 그 영향이 미미하여 조정율을 업계에서 체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과도하게 낮은 조정율이라 판단됩니다.

건의사항

기존의 등급별 환율 연동 조정에 대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2%에서 5%로 개선 조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인사 및 준법

1

총 주요이슈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이슈요약

한국의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하여 정책적 효과성도 낮다”고 하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인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률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보다도 훨씬 강한 4중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은 신체형에 대한 규정없이 법인에 대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영업정지 및 작업중지 등의 행정제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당 법률 위반 기소 건수가 많지 않고, 수사기간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모호한 법률규정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해설서 내용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인 노동청 및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고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 구체적인 위임규정 없이 정부가 작성한 구속력 없는 해설서를 근거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대상을 획일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여지를 제공합니다.

건의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처벌요건의 명확화를 통해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행주체인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 및 원청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한 의무내용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신규

보험

7

총 주요이슈

1.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의 개선 요망

이슈요약

2023년 9월 이후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내부망에서 SaaS, 특히 M365 사용 관련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 승인과정의 복잡성과 긴 리드타임의 문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 경쟁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국제적으로 금융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하에서 국내 우수 사례의 그룹 내 전파 및 수출이 가능함에도, 과도한 망분리 규제로 인하여 글로벌 트렌드에서 고립되어 국내에만 적용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현해야 하며 생형 AI 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국제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우수 IT인재 채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IT인력의 원격 근무가 불가하여 우수 인력의 타산업으로의 유출 문제가 발생하며, 효율적인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어려움은 IT인력 채용의 제약사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첨단 보안 및 IT 개발/운영 솔루션 적용이 불가합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안관리 및 IT개발/운영 관련 SaaS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벌 첨단기술 기업들이 보안 및 IT 개발/운영관련 제품들을 SaaS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망분리 규제 하에서는 첨단 제품 사용 기회를 잃게 되고, 이는 망분리 제도가 의도하는 금융기관 보안 강화라는 목적에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의사항

모든 내부 데이터/자산에 대한 과도한 망분리를 요구하는 현재의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여, 중요한 데이터와 자산에 대해서는 망분리를 적용하되 중요도가 낮은 데이터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이 적절한 보안통제를 마련하여 신기술 트렌드를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리스크 기반의 정보보호 제도로 전환하기를 건의합니다.

샌드박스 승인과정이 최대한 간소화되길 요청 드리며, 비중요업무의 경우,

샌드박스 승인 없이 회사가 보안 준수를 전제로 자유롭게 신기술 적용을 시도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개정

2.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폐지 또는 적립방식 변경

이슈요약

2023년 IFRS17 도입과 함께 이익잉여금 내에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신설되었으며, 준비금 적립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재원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건전성은 이미 K-ICS(지급여력제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급여력비율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준비금을 통해 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중복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보험회사의 이익잉여금 내에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폐지하여, 국제기준인 IFRS17 원칙과 부합되도록 조정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배당과 관련한 중복규제를 제거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투자유인 효과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준비금산출 업무 제거를 통한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성 증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일시에 인식하는 대신,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해약환급금준비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적립한다 등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보호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당가능재원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장기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6
금융위원회 보험과
개정

3. 1,200% rule 적용 강화

이슈요약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첫째 수수료 상한액을 1,200% 규정한 취지에 맞게 GA소속 설계사에도 1,200%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1,200%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하여 신계약수수료 등과 달리 계산하는 사례와 GA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경우 1,200% 이상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사례로 인해 기존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GA의 높은 수수료 보장과 보험회사의 과다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지급 등은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과 승환 유혹, 새로운 상품 및 시스템에 따른 불완전판매 양산, 보험회사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높이고, 이는 보험료에 전가되어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 경쟁이 계속될 경우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당초 1,200%로 첫째 수수료 상한액을 규제한 취지를 살려 규제의 빈틈을 노리는 부당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

보험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에게만 적용되는 1,200% 규정을 법인보험판매대리점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적용하기를 건의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의 스카우트 비용도 1,200%에 포함되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6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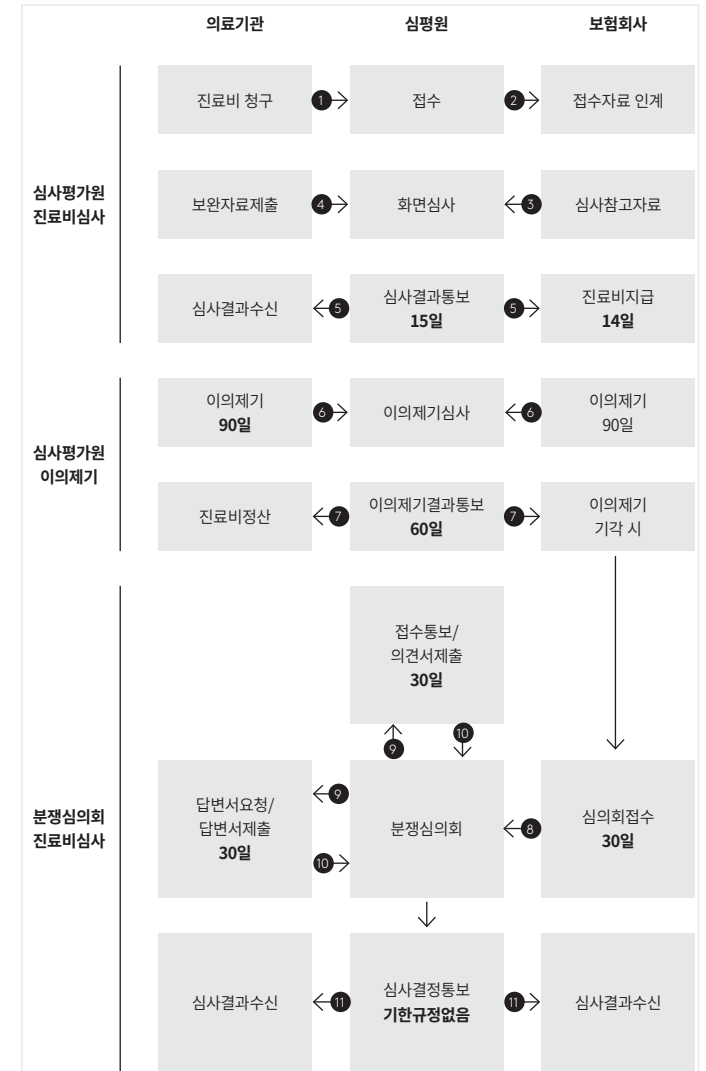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사결정통보 기한 제정 및 심사결정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반영 요청	이슈요약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설립취지는 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이나 심사결정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사결정까지 2년 이상 걸리는 등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심의회 심사결정사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회사 등은 심평원 이의제기 및 분쟁심의회 접수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불필요한 업무증가 및 심사수수료 지출 등 비용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	---

현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프로세스는 다음 페이지에 소개된 표와 같습니다.

현재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분쟁심의회 심사결정기한을 제정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로 진료비 등 손해액을 조기 확정하고, 분쟁심의회 결정내용을 심평원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기 분쟁심의회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한 심평원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심사평가원·분쟁심의회 불필요한 반복 업무비용인 분쟁심의회 접수수수료를 (건당 기본 5만원 + 의뢰금액 10%) 줄일 수 있습니다.



건의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기한을 제정해 주시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사결정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반영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및 제12조2(업무의 위탁),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심의회),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청구 등)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5. 계약자 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 기준의 유연성 제고로 손생보 참조준보험요율의 교차 선택 허용 요망

이슈요약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준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는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이 유연하지 않아, 판매건수 및 보험금지급건수가 많은 대형사는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소형사는 판매건수 및 보험금지급건수가 적어 과거 경험통계로 경험위험률 산출이 어려워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형사의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율을 사용하는데, 참조율을 산출하는 통계의 대부분도 대형사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되고 있어, 소형사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5항에서 할증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기준이 유연하지 않아 여전히 소형사는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의사항

소형사도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사의 실정을 고려한 경험위험률 산출 및 적용에 대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즉, 보험요율산출기관(개발원)은 생보사와 손보사에 다른 참조준보험요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보장정의(보험금 지급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생보사와 손보사 구분으로 인해, 생보사는 생보참조준보험요율만을, 손보사는 손보참조준보험요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제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집단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생보/손보 참조준보험요율의 교차 선택이 가능하게 한다면, 계약자집단의 위험도에 보다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보험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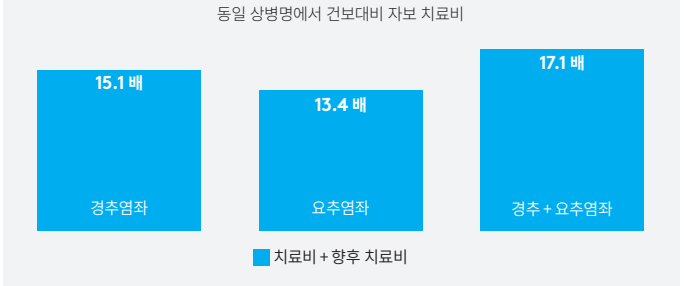
경미 사고에 대한 진료기준 명확화

이슈요약

경미 사고의 경우 보상심리로 인한 과잉 및 불필요한 진료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경미 사고에 대한 공학적 분석을 통한 명확한 진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경상환자(부상급수12~14급) 진료비 비중은 82%로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체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경요추염좌 진단의 경우 건강보험대비 자동차보험 치료비가 17.1배 높습니다.



경상환자 진료비는 연간 최대 7천억~1조3천억원 과다지급이 추정되며(19년기준), 이는 차량 한대당 자동차보험료 3.4~6.2만원의 추가 부담의 사회적 비용 발생하는 꼴입니다.

경미 사고로 인한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 KBS 9시 뉴스보도)

건의사항

경미사고 피해자에 대해 의학적 소견 외 공학적 상해위험분석 적용을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상해분석의뢰를 활용한 일정 속도변화(ΔV) 이하의 경미사고는 진료를 제한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정 속도변화(ΔV) 이하의 사고는 상해없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 출처 - 보험개발원

※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RCAR), 속도변화(ΔV)에 따른 국제권고기준 제시

- 독일의 경우 속도변화(ΔV) 11km 미만 상해없음 판단
- 스페인의 경우 속도변화(ΔV) 8km 미만 상해없음 판단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 및 제11조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7. 이슈요약
IFRS4 기준 업무보고서 작성 폐지
2023년부터 보험회사는 IFRS17을 기준으로 재무제표 및 각종 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에는 여전히 IFRS4 기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 보험회사는 신기준(IFRS17) 및 구기준(IFRS4) 모두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매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중 구기준 보고서(IFRS4) 삭제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재무제표의 서식 등),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26 (업무보고서)
관련부처	금융감독원 보험계리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강선영
매니저
지식재산권 위원회

지식재산권

9

총 주요이슈

1.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이슈요약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분석을 위해 OECD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2023년 5월~11월). 그러나 이 연구는 K-브랜드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반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국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 기업의 경제활동환경 지원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 산업군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포괄적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연구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특허청 통합검색 및 국내 플랫폼 검색을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연구 보고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공공에 공개되는 정보라면 순위권 접근 경로를 제공해야 하며, 보고서의 발간 시기 및 주기, 열람 제한이 있는 경우 공개범위 여부 등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근 EUIPO의 연구가 2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도 보고서의 규칙적인 발간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서 발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발간 예정 시기와 개괄적인 보고서 내용(목차)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위조상품 피해연구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전체 경제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조품에 대해 정밀하고 지속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산업군을 포함한 연구 범위의 확장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이슈요약
ECCK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국정과제 목록에 올해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안건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저작권법’ 침해 시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5천만 원의 벌금,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특허법’ 침해 시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불법 위조품 유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국내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수위는 변화가 없으나, 기술유출범죄, 즉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식재산 및 기술침해범죄의 양형 기준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으며, 이는 법적 대응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법적 틀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건의사항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는 현대 경제와 기술 발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따른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형사처벌 기준을 일관되게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양형기준의 정비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재범의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양형위원회 재건의
-------------------	--------------

3.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이슈요약
관세청의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표권 적발 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건수 -20.2%, 수량 -20.2%, 중량 -7.3%). 온라인 시장의 가속화와 날로 보편화 되고 있는 해외 직구로 인해, 소량화물 형태의 위조품의 유입은 늘어났을 것임에도, 건수 기준 우편물을 통한 적발은 전년대비 80.3% 감소(-31,738건)한 반면에 특송목록의 적발 건수는 그저 15.2% 증가(+9,156건)에 그쳤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국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적발 조치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위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 중 디자인권은 5,302 건으로, 전체 신고의 23.49%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상표권이 압도적으로 많고(98.4%), 디자인권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이해되는 기타 지식재산권은 단 1.5%에 그쳤습니다.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은 국경단계의 디자인권 보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의미이나, 현재 그에 상응하는 적발은 거의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
2019년부터 EMS(Express Mail Service)로 수입되는 위조품의 적발은 관세청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권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고, 위조품 수입자들은 더 이상 국제우편물(EMS)로 침해물품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다른 물류 채널을 사용하여 다양한 물류채널을 통한 침해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특송목록을 처리하는 각 세관 현장에서 증가하는 물량에 맞게 침해 의심 제품을 선별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세관의 국제우편물 지재권 상설감정장과 같은 전용 공간 및 설비 설치 운영과 같은 관련 인프라 지원을 건의합니다.

관세청은 디자인권 침해물품 적발의 필요성과 그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와 함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스마트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고, 2024년에는 관세청에서 해당 스마트틀의 결과물을 검토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일선 세관에서 1년간 시범 사용을 통해 스마트틀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적용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개정
-------------------	--------------------

4.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이슈요약
2018년 국제 우편물 통관 규정 제8 조의 2가 개정되어 위조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지 않고 압수·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관세청과 기업은 EMS(Express Mail Service)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신속한 소포 분류, 현장 감정, 소포 데이터베이스 등의 방법으로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EMS 프로젝트가 확장되어 우체국 소포뿐만 아니라 항구 및 민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입된 소포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EMS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요하는 프로젝트로,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제우편물의 방대한 양에 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수가 적어 EMS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위조품의 검수율을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압수된 우편물을 보관할 창고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위조품 적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매년 1-2회 정도 해외 직구 극성수기에 대비해 특송·우편물품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통관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단속 시기에 적발되는 위조품의 양이 매우 많고 최근 들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통관되는 위조품의 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90%의 위조품이 수입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특송·우편물품을 통해 수입되어 들어옵니다.

건의사항

국제 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위조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세관의 추가 인력 배치 및 EMS 프로젝트를 통해 압수된 소포의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의 확장을 건의합니다. 또한 중국 플랫폼을 통한 위조품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기존에 연 1-2회 실시되는 특송·우편물품 집중단속을 보다 더 높은 빈도로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규정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부처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방지 제도마련

이슈요약

온라인 마켓과 소셜미디어가 위조품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불법 위조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불법 위조품의 판매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자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각 플랫폼마다 조치의 정도가 다른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알리,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품 판매자에 대한 판매 중지 및 제재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상 위조품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특허청의 자정 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

ECCK는 2020년에 발의된 상표법 개정안과 2022년에 발의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구매자의 정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점을 환영합니다.

또한, K-브랜드와 더불어 다양한 수입브랜드의 상표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청이 주도하여 상표권자, 마켓 플레이스 및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간담회와 같은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미 있는 의견 수렴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개정

6. 해외 플랫폼 직구로
인한 수입 위조품
증가에 따른 조치 마련

이슈요약

최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출과 사업 확대로 인해 목록통관 소량화물의 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중국발 직구 물품 건수는 전년 대비 70.3%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통관 물품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가파른 속도입니다. 평택세관의 경우, 2023년에만 3,975만 건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을 처리했으며, 이는 세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 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타 세관 대비 3배 이상의 물량을 소화한 것입니다.

중국발 소량화물의 폭증으로 인해 위조품 유통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에 따르면, 목록통관 특송물품 침해 적발 건의 93%가 중국산 위조품이었으며,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발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위조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소비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2024년 3월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은 통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나, 급증하는 중국발 해외직구 목록통관 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평택세관에서 처리하는 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검사율 확보와 위조품 유통 방지, 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 인력의 대폭 확충과 검사 전용 공간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상표법
관련부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와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7.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슈요약

2023년 1월 23일, 관세청은 위조품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142,930점의 위조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25개 제품에서 기존 납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 초과하는 납 및 카드뮴 등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중추신경계, 생식계, 호흡계 등 여러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현재 해외 직구 또한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해제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증가와 더불어 위조품은 단순한 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ECCK는 위조품이 지닌 국민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지난 2월 15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와 4월 5일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4월 5일에 진행된 2024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에는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무역위),

법무부, 중기부, 관세청, 특허청 등 여러 지식재산 유관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ECCK는 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경찰관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 '위조품 단속 수사 담당 수사관 성과인정 제도 구축, △ '인력 충원'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

위해성이 있는 위조품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지하며, 추가적인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지식재산 침해물품 단속은 담당 수사관의 성과 인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사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최근 위조품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의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해당 부처에서 지재권 수사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실행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EU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성과에 따라 보너스와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지재권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시 지재권 침해 단속 부서에서 성과에 따라 수사관들에게 특별 보너스와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효과적인 성과인정제도를 마련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부처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무역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8.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 이슈요약**
서울특별시 지자체 공무원들은 2013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서울 유명 관광지에서의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를 상당 부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CCK는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ECCK가 서울시와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성과에 기여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CCK는 현재 공공연하게 위조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국제시장과 대구광역시 서문 시장에서도 서울특별시에서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연한 위조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계도하고 보다 자주 단속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CCK가 2023

년 5월 511명의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⁶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위조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7%가 노점상 및 전통시장에서 위조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노점상 및 전통시장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는 위조품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들로 하여금 위조품 감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부산중구청과 대구중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38호, 제6조 제35호에 의거하여 위조 행위를 조사하고 불법 제품을 압수하기 위해 근무지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제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효과적인 위조품 근절 단속을 위해서는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조품 감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관련부처	부산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대구중구청 일자리경제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9. 저작권법 로열티 부과 방식의 국제기준 조화
- 이슈요약**
한국의 공연권 제도는 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과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국제적인 약속과 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적 음반이나 영화 작품이 보상 없이 공공에서 공연되는 경우 저작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는 특정 시설(업종)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목록에는 3000제곱미터 이하의 상점과 모든 종류의 식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대통령령으로 커피숍, 체육관 등이 추가되었지만, 이는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많은 소규모 상점이 대형 체인점에 속해 있는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은 그들의 작품 사용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 저작권법은 매장 크기와 업종에 따라 고정된 방식으로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EU와 미국의 비교적 유연한 로열티 부과 방식과 다릅니다. 현재의 로열티 수준은 낮아 저작권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및 해외예술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작권 침해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규범을 충족시키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TRIPs 협정과 EU와의 FTA에 따라, 공공에서 저작권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 대상인 업종을 특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에서 특정 이유와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예외 업종만 특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로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한 예외는 제한적이어야 명백한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월간 로열티 지급 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저작권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국제 기준과 사례를 참고하여 매장 면적과 업종에 따라 로열티를 차등 부과하는 유연한 방식을 도입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로열티가 국제 표준에 맞는 공정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향상시키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윤신원
매니저
주방 및 소형가전
위원회

주방 및 소형가전

3

총 주요이슈

1. 기구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정밀 검사 실시 제도' 검사일 기준 완화 요청

이슈요약

2022년 2월 22일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 검사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은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구의 경우 식품 또는 용기·포장과 달리 정밀 검역을 받게 되면 식품 접촉 부위에 해당하는 모든 부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부품이 많은 제품(예: 믹서기, 커피 머신, 토스터기 등)은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i) 재질, 색상 분류 등 검사 대상 관련 부품을 확인하기 위한 준비 기간 필요
- ii) 검사용으로 제출하기 위해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데, 각 부품의 공급처가 다르고 생산 일정도 일괄적이지 않아 해당 수량을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 소요
- iii) 5년 도래 후 첫 수입신고 일정에 맞춰 해당 완제품과 해당하는 모든 부품을 하나의 B/L(선하증권)로 선적하여 들여오는 일정 조정의 어려움. 모든 부품이 준비될 때까지 출항을 보류하거나 보세 구역에서 대기 필요
- iv) 일부 부품이 기간 내 수급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 수입 불가. 이 경우 같이 선적된 신제품 또는 판매 계획에 맞추어 주문한 제품 등은 유통 일정에 큰 차질을 빚으며 브랜드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및 매출 손실 발생
- v) 다품종 소량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5년 주기가 한 번에 도래하는 제품이 많으면 다양한 제품의 모든 부품을 특정 기간 내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건의사항

완제품만 수입하여 정밀 검사를 받는 식품 또는 식품 용기·포장과 다르게 식품 '기구'는 완제품과 해당 제품의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에 대해 검사 받아야 합니다. 규정하는 5년 주기에 맞추어 식품 '기구'의 모든 부품을 일괄 준비하기 어려운 수입업체 상황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예정일 6개월 전부터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련규정
관련부처
건의사항 조치현황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
재건의

2.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대상 기준 완화

이슈요약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형식승인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된 제품 중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은 형식승인 대상 제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최대용량이 1kg을 초과하는 저울은 용도와 관계없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대용량 1kg 초과하는 가정용 저울의 정식 수입은 한국용 제품 개발 및 해외 물류 별도 관리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리 등 고정밀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해외 직구 및 소규모 판매업체를 통한 구매 등 규제우회를 고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상업적 거래(Commercial Transactions)를 위해 다른 제품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려는 저울, 즉, 판매할 다른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저울(질량 단위의 가격을 참조)은 Directive 2014/31/EU, 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NAWI)에 따라 CE마크, 적합성 선언 (DoC)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 조리를 위한 재료의 양을 계량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저울, 개인 측정용 욕실 저울 등 상업적 가격 책정 목적이 없는 가정용 저울은 동 지침에 따라 제조사명 및 최대 하중만 표시하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 가정용(조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울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기술기준 (JIS B7613)을 준수하고 저울에 하기 표시를 해야 하며(자기적합성 선언), 판매자는 다음의 표시가 없는 저울 판매는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우회에 대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제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건은 2022년 12월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대상 과제(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인증부담 완화 추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형식승인 대상 저울의 제외 대상에서 최대용량 부분을 삭제하여 주시거나 또는 최대용량을 현실적으로 반영 (예시: 1kg 이하 에서 3kg 이하)하여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1. 비자동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삭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안)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1. 비자동저울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0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3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관련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3.

가정용 저울에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표기방법

이슈요약

한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용 저울에 법정단위만 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로 비법정단위 표시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가 함께 표시된 수입 상품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저울에 여러 질량 단위를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은 저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위인 kg(킬로그램)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인 oz(온즈), lb(파운드)가 전자저울에 순차적으로 표시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위반사항이 되어 수입이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위의 표시가 불가한 것은 오히려 한국에 있는 소비자가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 식재료의 구입 및 조리법 접근이 자유로운 상황을 고려 시, 해외 거주 경험이 많은 내국인 및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직구 및 스마트스토어 등 소규모 판매업체를 통한 규제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 중인 대다수의 온습도계의 경우, 법정단위(섭씨온도)와 비법정단위(화씨온도)를 교대로 표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건의사항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규제우회에 대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정용이라는 제품의 특성에 부합하여 다양한 질량 단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제안으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5조(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제1항 제3호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합니다.

(권고안)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5조(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제1항

3. 제품의 훼손 또는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유로 비법정단위 표시 제거가 곤란하여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가 함께 표시된 **(교차 표시 포함)** 수입 상품의 경우로, 다만, 표시된 비법정단위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단위이어야 함

관련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1항 및 제3항

관련부처

-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5조(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병기 기준 등) 제1항 제3호

건의사항 조치현황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신규

김예지
매니저
조선 및 해양 위원회

조선 및 해양

1

총 주요이슈

1.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이슈요약

해양수산부는 2024년 2월 2일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범위를 명시하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기존 선박안전법의 대상인 이동식 시추선 및 수상호텔과 함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포함한 한국 해역의 모든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건조검사 및 정기검사의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승인 및 제반 검사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선박검사 대행 기관(Recognized Organization: 이하 검사대행 기관) 선정 규정에 따라 선정된 한국선급(KR), 뷰로 베리타스(Bureau Veritas, BV)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중 한 곳에 의해 한국 정부 규정을 준수하며 수행되어야 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국내의 시장에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치 사슬의 모든 부분에서 비용과 효율이 대단히 중요한 신흥 산업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는 정박 고정형이며 단기간의 기술 유지보수 외에는 일반적으로,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선박이나 유인 해상 석유 및 가스 설비의 운영에 비해 안전 위험도가 낮기에, 이에 대한 시공 요건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 부유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관련 개발사들이 합리적인 투자 비용으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한하게 됩니다.

국제 표준에 따른 설계, 생산 및 운영을 요구하는 승인 체계와 표준화된 접근 방식은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산업에서도 한국의 조선소 및 공급업체를 포함한 한국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성장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한국 정부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의무 안전 검사 권한을 한국선급, 뷰로 베리타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외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사 대행기관

최소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추가로, 해양수산부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 하부구조물에 적용되는 기술 요구 사항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IEC 표준에 따라 이러한 하부구조물을 무인 유닛으로 인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준수를 단순화하고 규제 기대치를 명확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신혜원
매니저
지속가능성
위원회

지속가능성

1

주요이슈

1.
한국의
녹색전환계획의
영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개발

이슈요약

탄소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비재무적 성과는 서로 다른 성격(정량적 및 정성적)의 시스템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경우 각기 다른 기준으로 정보를 비교하게 되어 일관된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계획을 수립한 만큼, 그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의 비교 가능성, 책임성 및 관련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확보한다면,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이러한 원칙을 더 잘 준수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녹색전환계획을 대중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EU와 한국 간의 상호 시장 접근 및 협력을 촉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정부의 녹색전환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가) 영향 측정을 위한 주요 성과 지표 설정
- 나) 지속가능한 인프라, 자금 조달, 자원 배분 및 새로운 소비 형태에 대한 투자로 창출된 실질적 가치를 (영향 측정 개념에 따라 금전적 가치로) 측정하며 궁극적으로 ISSB 또는 다른 ESG 공시 기준과 연계
- 다) 정부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 촉진
- 라) 분기별 보고를 통한 대외 협력 및 소통 강화

마찬가지로, EU, 미국 및 기타 국가들도 비즈니스 환경과 규제 기관과 함께 비재무적 가치 창출 평가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녹색전환계획을 더욱 더 잘 알리려면, 공통 기준을

갖춘 측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해외 파트너들과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부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김시윤
매니저
조세 포럼

조세

3

총 주요이슈

1.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이슈요약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6 제5항에 따라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1명당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및 900만원 (대학생)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만 공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세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 6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재건의

2.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요건

이슈요약

국조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단기간 사업을 운영한 회사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연환산 대상 납세자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며, 가급적이면 해당 연도의 상당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로 제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사업을 운영한 납세자가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3. 이슈요약
- 임시 수입된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시 적정 과세가격
- A.T.A 까르네란 전시 및 박람회용 물품, 상품 견본 등을 관세 납부 없이 국내 일시 수입 등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해당 용도로 사용 후 국외로 반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시 반입 후 까르네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의 용도 외 사용 승인과 유예된 관세 납부가 필요한데, 이때 어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국내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하나,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됨을 전제로 함에 따라 일시 반입 당시에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르네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용도 외 사용 승인 신청 대상 까르네 물품의 경우 제31조 내지 제34조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동법 제35조에 따라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은 해당 물품이 물리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시점에 결정되어 있는 까르네 증서상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담보 금액 설정을 위한 명목상 가격일 뿐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적인 기초가 되는 실제지급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현행 법령상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시 적정 과세가격 기초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견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합니다.

참고로 거래가격(실제지급가격)이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적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관세평가 원칙에 따라, 용도 외 사용 승인시 수입자가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이 있는 경우 동법 제35조 하에서 해당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관세법 제35조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건의사항 조치현황	신규

ABV	알코올 도수
AREC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A.T.A Carnet	일시 면세 통관증서
B/L	선하증권
BTD	혁신의약품지정
BV	뷰로 베리타스
CCA	화학물질관리법
CE	유럽 통합 규격 인증
CPS	핵심 플랫폼 서비스
CS	고객 상담실
CSAP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C&L	분류 및 표시
DMA	디지털시장법
DMCC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
DoC	적합성 선언
EBL	발전사업허가
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HA	유럽화학물질청
EEZ	배타적 경제수역
EMS	국제우편물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환경·사회·지배구조
EU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V	전기차
FAS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
FDI	외국인직접투자
FIPS	미국 연방 정보 처리 표준
FOW	부유식 해상풍력
FTA	자유무역협정
GA	법인보험판매대리점
GHG	온실가스
GHS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GIFT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심사제도
GMP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

HS	조화 상품 코드
HSI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HQ	본사
IARD	책임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연합
ICER	점증적 비용효과비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FRS	국제회계기준
IMF	국제통화기금
IPR	지식재산권
IRP	외국약가참고
ISO	국제표준화기구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T	정보 기술
JIS	일본 공업 규격 인증
KART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K-ICS	한국보험자본기준
KOSMA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R	한국선급
LoC	확인 관련 서류
M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NAWI	비자동식 저울
ODM	제조업자 개발 생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M	주문자 상표 부착
OR	유일대리인
OS	운영체제
OSHA	산업안전보건법
PET	음료수 병 등의 제조에 쓰이는 합성수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IC/S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RIME	의약품신속평가제도

줄임말

줄임말

국문

PVA	사용량 약가연동제
QC	품질관리
QR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바코드

RCAR	세계자동차수리기술연구위원회
RCS	글로벌 스마트폰 메시지 표준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IFM	향료소재연구소
RO	안전 인증 기관
RSA	위험분담계약제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P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SoC	위해우려물질
SPF	자외선차단지수
SSA	선박안전법

TF	특별 전담 조직
TRIP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URL	파일식별자
-----	-------

VAT	부가세
-----	-----

기관

기관

줄임말

국문

DAPA	방위사업청
------	-------

FSC	금융위원회
FSS	금융감독원
FTC	공정거래위원회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KATS	국가기술표준원
KCS	관세청
KEPCO	한국전력공사
KHIDI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PO	특허청
KOIP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NPA	경찰청
KTC	무역위원회

MCST	문화체육관광부
ME	환경부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MND	국방부
MOEF	기획재정부
MOEL	고용노동부
MOF	해양수산부
MOHW	보건복지부
MOIS	행정안전부
MOLIT	국토교통부
MOTIE	산업통상자원부
MS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FSI	식품안전정보원
NHIS	건강보험공단
NICS	화학물질안전원
NIER	국립환경과학원
NTS	국세청

기관별 안전 리스트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경찰청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9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확인서류 서명 주체 확대	43
	국내 제조 제품의 MSDS 제출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 허용	44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안	4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 규제해소	4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안	78
공정거래위원회	개방형 디지털 플랫폼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안	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 기준 개선안	53
관세청	수입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소매용 포장 원산지 표시 개선	6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강화	88
	국제우편물(EMS) 수입통관 효율성 제고	89
	해외 플랫폼 직구로 인한 수입 위조품 증가에 따른 조치 마련	91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91
국가기술표준원	QR코드 사용을 통한 상품 정보 표시	63
	신발류 제품의 중요정보 표기방법	64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가족제품 표시기준의 유연성 제고 및 개선	65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대상 기준 완화	96
	가정용 저울에 비법정단위와 법정단위 표기방법	97
국방부	군작전성 이슈 관련 사전 협의 행정기관 창구의 마련	59
	군사기지법 보호구역 사전검토 대상 확대 및 관련 훈령 개정	62
국세청	모든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 상거래 기회 확대	38
	발효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41
국토교통부	한-EU FTA에서의 기술규정 인정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3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 제출의 대상 차량 범위	32
	신기술에 대한 특례 인정 절차의 마련	3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사결정통보 기한 제정 및 심사결정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반영 요청	82
	경미 사고에 대한 진료기준 명확화	85
금융감독원	IFRS4 기준 업무보고서 작성 폐지	86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클라우드 관련 망분리 규제의 조속한 개선 요망	80
	해약한급금준비금 제도 폐지 또는 적립방식 변경	81
	1,200% rule 적용 강화	81
	계약자 집단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위험률 적용 기준의 유연성 제고 로 손생보 참조순보험요율의 교차 선택 허용 요망	84
기획재정부	모든 주류소매면허자에 주류 전자 상거래 기회 확대	38
	발효주류(과실주) 종량세 확대 검토	41

관련 부처/단체	안건 제목	페이지 번호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103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요건	103
	임시 수입된 까르네 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시 적정 과세가격	104
대구중구청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92
무역위원회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9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로열티 부과 방식의 국제기준 조화	93
방위사업청	산업협력 할당제 (컨소시엄) 요건에 대한 개선	29
보건복지부	혁신적 의료 제품의 가치 저하 및 불공정 경쟁 환경	73
	혁신 약물 가치 지속적 저하	74
	위험분담제 제도 개선	75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조정 제도의 조정율 표 등급 세분화	77
부산중구청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지정	92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에서의 기술규정 인정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	3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등재 절차 개선	37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제안	56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주민수용성 심사기준 구체화	57
	부유식발전소 규격 제정 검토	59
	해상풍력설비의 가중치 변경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필요	60
	풍력고정가격입찰 낙찰시 복수의 Off-taker와 계약 허용 필요	60
	300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용전검사 완료를 위한 기간 완화	61

관련 부처/단체	안건 제목	페이지 번호
식품안전정보원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시 해외제조업소 공문의 인정 범위를 확대	69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 표준 및 관행과 합치되는 주류 라벨 규정 도입 요청	39
	기능성화장품 심사 자료 요건 변경 시 유예기간 부여	49
	기능성화장품 탈모 완화 효능의 인체적용시험 기간 축소	50
	자외선차단지수 (SPF) 표시 범위 확대	50
	화장품 표시 광고 행정 처분의 완화	51
	수입식품 완제품에 사용된 물리적 재생 원료 사용 식품 용기 허용 기준 마련	67
	수입식품의 '연월' 표시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기 방법 변경	68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갱신 시 해외제조업소 공문의 인정 범위를 확대	69
	내용량 감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재검토	7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영업범위에 관한 제언	71
	완전한 GMP 평가 상호인정과 품질관리시험 개선을 위한 한국-EU 상호인정협정의 진행 및 생물학적 제제의 중복적인 품질검사 개선 관련 규정의 구체화	76
	기구의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정밀 검사 실시 제도' 검사일 기준 완화 요청	95
양형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88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의 녹색전환계획의 영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개발	101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87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위조품 유통방지 제도마련	90
	위조품 유통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91
한국전력공사	계통 연계정보 공유 방안 제안	56

관련 부처/단체	안전 제목	페이지 번호
해양수산부	해상풍력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 단계에서의 주민수용성 심사 기준 구체화	58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58
	군작전성 이슈 관련 사전 협의 행정기관 창구의 마련	59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	99
행정안전부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제한·유독물질의 수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중복규제	48
화학물질안전원	동일 물질에 대한 OR 및 수입자 병행 등록 허용	46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47
환경부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FAS) 준수를 위한 유연성 부여	34
	전기차 보조금 평가 혹은 광고 목적 자동차에 대한 관리 기준의 개선	35
	중대형 전기 화물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36
	화평법과 상이한 산안법의 화학물질 목록으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 개선안	4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사항의 중복 규제해소	45
	동일 물질에 대한 OR 및 수입자 병행 등록 허용	46
	살생물제품 중 향료 성분의 유·위해성 자료 제출 범위 완화	47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 및 제한·유독물질의 수입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중복규제	48
	수입식품 완제품에 사용된 물리적 재생 원료 사용 식품 용기 허용 기준 마련	67

주|한|유|렵|상|공|회|의|소

주|한|유|렵|상|공|회|의|소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백서 2024